

중국 양심수 강제장기적출에 관한 독립 재판소

최종 판결과 요약-2019

재판소 구성원

영국여왕 고문 제프리 나이스 경(Sir Geoffrey Nice QC)

마틴 엘리엇 교수(Prof Martin Elliott)

앤드류 쿠(Andrew Khoo)

레지나 파울로스(Regina Paulose)

샤디 사드르(Shadi Sadr)

니콜라스 베헤츠(Nicholas Vetch)

아서 왈드론 교수(Prof Arthur Waldron)

요약 판결

중국 양심수 강제장기적출에 관한 독립 재판소

중화인민공화국이 중세 시대의 고문, 사형 집행자들과 필적할만한 잔인하고 사악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고발은 10년 이상 공개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만약 그 고발이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다.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온전한 존재-신체-를 절단하라는 주문에 따라 살해되었고, 그들의 신장, 간, 심장, 폐, 각막, 피부 등은 잘려나가 판매용 상품이 됐다.

의사들은 그 무고한 사람들이 단순히 진(眞), 선(善), 인(忍)을 추구하며 건강에 좋은 운동과 명상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전체주의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이익과 목적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살해했다.

그리고 아직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러한 고발에 대해 정치적 동기가 있는 거짓말이라고 응대하는 것 말고는 거의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류의 권리를 수호해야 할 전세계 정부 및 국제기구들은 모두 그 고발사실에 대해 의혹을 표시하면서, 이를 핑계로 수요에 따라 살해당할 처지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만약 이 고발이 사실로 증명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20세기 분쟁에서 자행된 최악의 잔학행위들에 비견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 죽음과 죽음으로 비교하면, 나치의 유대인 유독가스 학살, 크메르 루즈 대학살, 르완다 투치족 학살도, 무고하고 무해하며 평화로운 사람들의 살아있는 몸에서 심장 등 장기를 잘라내고 생명을 앗아간 행위의 잔혹함을 능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 고발 사실을 증명해내기 위해선, 앞서 언급한 이미지와 이를 설명하는 단어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대신 살아있으나 위험에 처했을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편견이나 사전판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판단을 가능케 하고 보편적인 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절차를 우선시해야 한다.

서론

1. 이는 '중국 양심수 강제장기적출에 관한 독립 재판소'(이하 '재판소'라 한다)의 만장일치 판단이다. 재판소는 통상 어디서도 다루지 않은 중요한 대중의 관심사를 판단하기 위해 설립되는 '민간 재판소(People's Tribunal)'로서, '중국 내 이식오용 종식을 위한 국제연대'(ETAC)에 의해 설립되었다. ETAC은 중국 내 강제장기적출 행위가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지속된다고 주장하며 그 종식을 위해 헌신하는 변호사, 의료전문가 등의 비영리 단체이다¹⁾.
2. ETAC의 주요 관심사는 파룬궁(Falun Gong) 수련자들에 대한 박해 의혹이었다. 명상 수행을 하며 진(眞), 선(善), 인(忍)을 추구하는 파룬궁은 1999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PRC)에 의해 '반인륜적, 반사회적, 반과학적 이단'²⁾으로 간주되어 왔다.
3. ETAC은 마틴 엘리엇 교수, 앤드류 쿠, 왕실 고문 변호사(QC) 제프리 나이스 경(재판장), 레지나 파울로스, 샤디 사드르, 니콜라스 베츠, 아서 왈드론 교수를 초청하여 재판소³⁾를 구성하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양심수에 대한 강제장기적출이 일어났는지, 그것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떤 형사범죄가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저질러졌는지를 증거에 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4. 설립된 이후부터 재판소는 재판소의 고문 하미드 사비와 타비타 나이스가 맡았다⁴⁾.

1) 중국 내 이식오용 종식을 위한 국제연대(The International Coalition to End Transplant Abuse in China, ETAC)는 2014년 중국 양심수 강제장기적출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원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출범하였다. EATC의 웹사이트는 독립적인 보고서, 강연, 증언, 정부 조치, 최신 뉴스, 언론보도 및 영상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당초 명칭은 '장기약탈 종식(End Organ Pillaging, EOP)'이었다.

2) 주 에스토니아 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에서 작성한 문서인 '파룬궁의 반인륜적, 반과학적, 반사회적 본성': www.chinaembassy.ee/eng/ztlm/jpflg/t112893.htm, 2018. 10. 1. 확인.

3) 앤드류 쿠: 칼라룸푸르 변호사, 말레이시아 변호사회 헌법위원회 공동의장, 마틴 엘리엇 교수: 런던 UCL 흉부외과 교수 겸 소아 흉부 이식 외과의사, 제프리 나이스 경: 영국 및 웨일즈 법정 변호사, UN 구유고슬라비아 형사재판소 검사(1998~2006), 레지나 파울로스: 미국 변호사, 미 변호사협회 난민법위원회 부의장, 샤디 사드르: 이란 변호사, '이란을 위한 정의' 이사, 인도네시아 및 미얀마 민간 재판소 재판관, 니콜라스 베츠: 런던 사업가, 국제인권신탁기금, 아서 왈드론 교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중국 전문가. 더 상세한 사항은 중국재판소 웹사이트 참조.

4) 하미드 사비 국제중재 변호사, 이란 재판소 고문, 타비타 나이스 변호사: 마커스 핀들리 법정 변호사, 변호사 케이스워커, 인권변호사협회 장학담당관

5. 재판소의 모든 구성원, 재판소의 고문 및 자원봉사 변호사는 어떤 종류의 급여도 없이 전적으로 '공공의 선을 위하여(pro bono publico)' 업무를 수행하였다. 누구도 파룬궁 수련자가 아니며 파룬궁에 특별한 관심이 없다. 재판소 구성원들은 독립성 보장을 위해 ETAC과 분리되어 거리를 유지했다.
6. 중화인민공화국 내 인간 장기이식에 대한 조사는 2001년부터 시작됐다.
7. 2009년 이후 주요 비정부 조사에는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데이비드 킬고어의 피의 수확(Bloody Harvest, 2009), 에단 구트만의 학살(The Slaughter, 2014), 세 저자가 모두 함께 작업한 중국의 강제장기적출 최신 보고서('An Update' to Bloody Harvest and The Slaughter, 2016)가 있다.
8. 정부 및 국제적 차원의 탐사와 조사는 다음과 같다 :
 - 2001 -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 소위원회
 - 2007 - 고문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의 보고
 - 2008 - 유엔 고문 방지위원회 보고서
 - 2009 - 비사법적, 즉결 또는 임의 사형집행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
 - 2013 - 중국 내 장기적출에 대한 유럽의회의 결의안
 - 2016 - 미국 인권 소위원회 보고서; 제114대 의회 제2회기
 - 2016 - 중국 내 양심수 장기적출 중지에 대한 유럽의회 선언문
 - 2016 - 미 하원 결의안 343호 - 제114대 의회(2015~2016)
 - 2018 - 국제 종교 자유에 관한 미국위원회(USCIRF) 보고서
 - 2018 - 2018년 11월 호주 하원 외교, 국방 및 무역, 인권 분과위원회 공동 상임위원회
9. 메이터스, 킬고어, 구트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강제장기적출이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지속되는 활동이라는 그들의 결론을 확신하게 되었고, 킬고어가 2019년 4월 7일 일요일 재판소에 제출한 증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그러한 사실이 다른 나라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다고 믿는다.
10. 몇 년간 일부 보고서는 국제형사법 위반죄의 성립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확실히 범죄 행위라고 단언한 보고서는 없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내 장기이식 행위의 범죄성에 대해 공식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권위 있는 발표가 있었다면, ETAC이 재판을 의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11. 재판소는 과거와 현재의 행위들을 고려했다. 혐의대상인 과거의 행위들을 - 입

증된 경우 - 과거지사로 여겨 제쳐두거나 더 편리하게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혐의들은 입증된다면 그 지속 여부와 상관없이 대중의 비난을 최대로 불러일으키는 가장 심각한 종류의 것이다.

관할권

12. 다른 민간 재판소의 관할권들 - 제2차 세계대전 군대를 위한 일본의 여성 성노예에 관한 '위안부 재판소', 베트남 전쟁에 대한 '러셀 재판소', 1965년 사건에 대한 '인도네시아 재판소', 1980년대의 사건들에 대한 '이란 재판소' - 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설정됐다.
13. 한 예로, 러셀 재판소의 구성원 장 폴 사르트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간 재판소]는 기존의 어떤 기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그것은 법적 근거 없이 실제 필요에 따라 설립되는 것이다.'
14. 사르트르는 뉘른베르크 재판소에서 시작한 국제 정의에 대한 보편적인 정신을 인지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기구의 세계 질서가 발전함에 따라 만들어진 모든 비공식적 민간 재판소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15. 러셀 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의 관할권은 공식 기구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장기이식 행위의 범죄성 여부를 선언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남겨진 공백에서 명백히 발견된다.
16. 행동할 것이 요구될 수 있는 공식 국제 사법기관은 2002년에 출범해 개인의 범죄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와, 중화인민공화국의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 혐의를 다룰 수 있는 국제사법재판소뿐이다. 두 재판소 모두 이런 문제와 관련해 확실히 무력하고, 어떤 경우에도 그런 요청을 할 만큼 힘 있는 국가들로부터 행동을 요구받은 적이 없었다.
17. 모든 기타 공식기구들이 미치지 못하는 공백에 기초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소는, 정부, 현존하는 기구들과 개인들이 본 판결의 내용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제 하에 그들이 판결 내용을 알게 된 이상 무엇을 할 책임이 있다는 식의 자체 권고안은 포함하지 않는다⁵⁾.

5) 가령 항공사, 여행사, 학술 및 예술 기구들, 전문협회(가장 명백하게는 의료 분야)를 포함하여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중국 관련 정책을 갖고 있을 것이고, 이는 권고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들이 민간 재판소로부터의 권고 없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가용 정보에 근거하여 행동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증거

18. 재판소는 2018년 12월 8일, 9일, 10일, 2019년 4월 6일과 7일에 증거를 제출 받았다..
19. ETAC은 제1회 기일에서 증거를 제출했으며, 제1, 2회 기일의 증거조사 이후에도 추가 증거를 다수 제출하였다. 재판소는 관련 법률문제에 관하여 서로 다른 관할권에서 활동하는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20. 재판소는 인터넷을 통해 만나 판단을 논의하였다.
21. 증인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석상에서 진술하였고, 그들의 증언 영상은 중국재판소(CHINATRIBUNAL) 웹사이트에서 제공된다.
22. 재판소의 고문 하미드 사비는 중화인민공화국 런던 대사 및 중화인민공화국 및 기타 국가의 저명한 이식 전문의들에게 공판 참석, 절차 참여, 증거 제시 혹은 단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초대장을 보냈다. 전 현직 이식학회(The Transplantation Society, TTS) 회장들에게도 비슷한 초대장을 보냈다. 이스탄불 선언(Declaration of Istanbul Custodian Group)⁶⁾과 이식학회(TTS) 대표들은 진술을 제공했지만 증거가치를 지닌 진술이 없었으며, 대표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들이 참석을 거부했다. 관련 서신은 모두 재판소 웹사이트에 게시되었다.
23. 따라서 재판소가 이용할 수 있고 고려 요소로 삼은 모든 자료는 - 증거를 직접 제공한 증인들의 녹화 영상을 포함하여 - 본 판결문의 독자들과 일반 대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심리 방식

24. **방법.** 심리 방식은 판결전문에 상세히 기술돼 있다. 다음은 그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 a. '증인의 진술증거는 보강증거 요구나 전문진술 배제의 제한 없이 '자유 심증'에 근거해 다루어졌다.

6) 'Declaration of Istanbul on Organ Trafficking and Transplant Tourism'
<https://declarationofistanbul.org> 참조.

- b. 모든 증인은 중화인민공화국 혹은 그 대리인의 심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소는 그들의 진술증거에 어떤 약점이 있는지 찾으려 주의 깊게 접근했으며, 실제 수련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파룬궁 지지자인 증인의 심리에 집단적 열정이 작용할 위험도 있다.
 - c. 재판소는 재판소가 결정해야 하는 최종 쟁점에서 전문가나 연구자의 의견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경우 다른 쟁점에 관하여 그들의 연구와 전문지식에 의존했다.
 - d. 재판소는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어떤 개인들이 재판 절차에 참여하라는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추론을 끌어내지 않았다.
 - e. 모든 서면 자료는 이를 뒷받침하는 기초 자료나 녹화 영상을 탐색해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학문 또는 연구 성과물과 같이 접근했다.
 - f. 재판소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전문지식에 근거해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마틴 엘리엇 교수는, 이따금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제에 의학 정보를 제공했다. 재판소의 모든 구성원은 판단에 있어 사실 증거와 법률 전문가 등 다른 전문가들의 전문지식에 근거해 행동하는 배심원들로 보일 수도 있다⁷⁾.
25. 절차의 매 단계는 중국재판소 웹사이트에 모든 증거와 함께 게시된 포스팅에 의해 설명되었다. 이런 식으로 대중들도 재판소가 한 것과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26. **법.** 영국 변호사회의 영국 여왕 고문 변호사(QC) 에드워드 피츠제럴드와 말레 이시아 변호사 닥터 N. 사바난탄에게서 받은 법률에 대한 의견과 조언이 웹사이트에 게시됐으며, 재판소 판결문에도 언급됐다.
27. 강제장기적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서 대중이 언급하는 제노사이드(genocide) 개념에 관하여, 형법 체계에는 비법률가인 시민이 이해할 만큼 간단한 정의가 없다는 것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제노사이드 범죄가 법정에서 기소될 경우 비법률가 시민들의 ‘제노사이드’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 사이의 간극으로 이어져 비현실적인 예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간극은 반드시 도움이 되거나 건전한 것은 아니지만 당분간 피할 수 없다⁸⁾.

7) 그 결과, 재판소의 변호사 구성원, 재판소 고문 및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전조건은 없었지만, 전 세계에서 변호사로 훈련된 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민간 재판소의 개념에 부합하게 그들과 다른 모든 이들은 법률 서비스의 제공 없이 평범한 시민으로서 행동했다.

28. 재판소는 '상대방 의견 청취' 원칙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에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29. 재판소는, 실제 범죄행위를 개인들이 수행했던 중화인민공화국이 직접 했든, 중화인민공화국이 고의(주관적 구성요건)와 객관적 구성요건을 모두 만족하는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심사를 적용함으로써 범죄 성립에 대하여 확실한 결론을 내렸다. 결론의 강도가 더 낮은 경우 '비 전문적 언어'를 사용할 것이다.
30. **편견의 위험.** ETAC이 접촉하기 전까지 재판소 구성원 대부분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장기적출 의혹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 인권 존중, 특히 유엔의 1948년 인권선언에 성문화된 권리를 존중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는 평판은 모든 구성원들이 대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증거 전체를 검토하는 동안, 재판소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지난 20년 동안, 1948년 세계 선언의 많은 규정을 현저히 위반했다고 확신하게 됐다.
31. 재판소는 그와 같은 확신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게 보장하기 위하여 증거를 범주별 또는 주제 영역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각 범주에 관련된 증거만을 각 범주별로 차례대로 검토하였다. 그러한 증거는 인권 기록이 양호한 가상의 국가에 관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분석되었다. 분리해서 살펴본 결과 그러한 증거는 무엇을 증명했는가? 이러한 작업의 목적과 가치는 재판소의 최종 결론에 드러나 있다.

8) 다른 이들로부터 직접 끔찍한 고통을 겪거나 고통을 겪은 이들을 대변하는 이들의 제노사이드(genocide)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와 사용에 대하여는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 어떤 고통도 그들의 고통의 무게에 필적할 수 없다고 믿기에, 그들은 제노사이드가 모든 가능한 범죄 중 최악이라는 전제에서 종종 자신들의 고통의 원인에 '제노사이드'라는 표지를 붙이기를 원한다. 이는 제노사이드만큼 혹은 제노사이드보다 더 나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범죄들이 많기 때문이 심각한 착오이다. 가령 2001년 트윈타워 파괴(역주: 911 사건)는 제노사이드는 아니었다. 만약 누군가 다민족 도시에서 핵 장치를 폭발시키거나 '더러운 폭탄'을 터뜨린다면 그것을 반드시 제노사이드라고 할 수는 없다. 제노사이드는 제노사이드 협약 또는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에서 한정하여 열거한 제노사이드 대상 그룹을 향한 개인 또는 정부기구의 특별한 적대적 심리상태가 증명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단순히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단에 적대감을 갖는 심리상태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비이성적이거나 심지어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명백한 비 제노사이드 사유(non-genocidal reason) 외에는 동일한 행위, 가령 적군으로서 봉기할 수 있는 특정 민족의 포로집단을 학살하려는 침착하게 계산된 결정에 의해 추동되는 심리상태보다 반드시 더 악하거나 사악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 집단이 법의 정의 규정에 포섭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하여, 한정된 범주의 자격 집단은 1948년 협약 초안에서 정해진 것으로, 오늘날 개정이나 심지어 불평의 대상은 아니다. 요컨대, 제노사이드라는 표지가 붙거나 제노사이드로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 문제의 잔학행위는, 예를 들어 '반인도범죄'는 결코 그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증거 - 이식수술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서술

32. 한 인간에서 다른 인간에게 장기를 이식할 수 있는 능력은 과학적, 사회적인 성과다
33. 모든 형태의 이식에서 동의의 원칙, 즉 장기 공여자와 그 가족의 동의는 필수이다.
34. 이식은 신뢰 위에 구축되며, 그 신뢰를 뒷받침하는 데 적절한 관리 구조가 필요하다. 해당 장기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의식이 있었던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명백히 살인에 해당된다.
35. 공여자를 희생시키지 않고도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골수, 신장, 간이나 폐의 일부를 공여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고품질 장기이식은 오직 사체로부터만 이루어질 수 있다.
36. 단 하나의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장기는 오직 뇌사상태의 사람들로부터만 적출할 수 있다;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이 그렇지 않은 경우였다.
37. 장기공여 법은 나라마다 다소 다르다. 편차는 주로 '옵트인(opt in)'인지 옵트아웃(opt out)'인지에 따라 생긴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반드시 건전하고 잘 확립된 윤리적 기초와 상당한 신뢰 위에 구축돼 있다.
38. 성공적이고 윤리적인 장기 이식이 이뤄지려면 다른 기술적 요소 이외에도 조직형과 혈액형이 일치해야 하고 질병이 없어야 하며 장기의 크기가 적절해야 한다.
39. 규모가 큰 이식 시스템에서는 장기 이용이 가능해질 경우 장기와 수혜자들을 효율적으로 일치시키는 인프라가 요구된다. 가용 장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나라에 공식적인 장기할당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다.
40. 각 나라에는 장기 회복을 위한 통합 시스템이 있는데, 이는 강력한 윤리원칙, 질적 보장, 임상 관리 지원 체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41. 제대로 작동하는 이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운송 및 장기유통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식 외과 의사, 내과 의사, 간호사와 기술자 등 숙련된 팀이 필요하다. 이식 수술은 광범위한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고도로 통합된 과정

이다.

증거 - 조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배경

42.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문명국가 중 하나이며, 인구는 약 14억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43. 중국 인민 -시민들- 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체주의 공산 정부 치하에서 살아왔다. 이러한 사실은 그 나라 시민 일부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할 수도 있으나, 중국 인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인권과 관련하여 다르다거나 다른 기대나 권리를 가짐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1989년 톈안먼 사태가 이를 말해 준다.
44. 이러한 시민들 가운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진, 선, 인에 대한 추구에 이끌린 7천만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출현했다. 그들의 신념은 1948년 중국의 한 시민이 세계인권선언 초안 작성에 공헌했던 때처럼⁹⁾ 오늘날의 인권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45. 중화인민공화국은 거대하고 강력한 국가이므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인민들의 인권은 세계 다른 시민들과 동일하게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46. 관련 초기 역사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해, 재판소는 중국 장기적출 연구센터(COHRC)가 재판소에 제출한 보고서 중 배경(background) 부분을 취신하고, 보고서 저자 중 데이비드 리와 리후이거 박사 두 명의 진술을 청취했다. 보고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a. 2000년 이후 중국 정부는 국가전략에서 장기이식을 우선시했으며, 다수 부처의 5개년 계획에 지속적으로 장기이식을 포함시켰다. 중국 정부는 연구, 개발, 인력 개발, 병원, 민간과 군사 기관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한 결과, 거대한 장기이식 기구를 설립했다.
 - b. 중화인민공화국은 불과 몇 년 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이식술

9) 세계인권선언 초안을 작성한 위원회는 당초 중국의 극작가이자 철학자, 교육자이자 외교관이었던 창평춘 박사를 포함한 세 명으로 구성되었다. 창 박사는 다른 대표들에게 중국의 인권 개념을 설명하고 협상 과정에서 유교 교리를 일부 채용함으로써 충돌하는 이념 파벌들 사이에 절충안을 이끌어내 많은 교착상태를 창의적으로 풀어낸 인물이었다. 그는 보편주의라는 미명 아래, 세계인권선언에서 자연 및 신에 대한 모든 암시를 제거하자고 주장하였다. 다그 함마르셀드 도서관(Dag Hammarskjöld Library) <http://research.un.org/en/undhr/draftingcommittee>

을 시행하게 됐으며, 이 모든 것은 자발적인 장기기증 시스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다.

- c. 국제적 비난에 대응하여, 중국 관리들은 2006년 사형수에 대한 장기적출을 중단했다고 발표하며, 이어서 자발적인 기증 시스템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이식 산업의 핵심인물 황지에푸¹⁰⁾는 2015년 CCTV 인터뷰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자발적 장기기증 인프라를 불과 몇 년 만에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는 그러한 과정에 수십 년이 걸린 다른 나라와 대조를 이룬다.
- d. 파룬궁은 불가 명상 수련이다. 1990년대 말, 정부 더 정확히 전 공산당 지도자 장쩌민은 7천만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을 중국 공산당과 그의 통치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1999년 중반 파룬궁 근절을 목표로 폭력적인 운동에 착수했다. 선택된 기구인 610 사무실은 대단히 광범위하고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사법절차 없이 체포하고, 재판 없이 구금하며, 처벌받지 않고 고문할 수 있었다.
- e. 1999년 7월 20일경 발행된 문서 및 통지를 수집해 보면, ‘투쟁’ -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악랄한 선전과 박해 운동이 공식 출범한 것을 알 수 있다
- f. 2001년 9월 초, 국제적인 압력과, 불법 감금된 파룬궁 수련자의 석방을 명한다는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뒤이어 610 사무소장 뤼간은 사법 시스템의 각급에 위 발표와 반대되는 비밀 명령을 내렸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으로 밝혀진 자는 누구든 은밀하게 체포돼 죽을 때까지 종신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같은 달 장쩌민은 또 다른 지시를 내렸다: '그들을 때려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맞아서 불구가 되면 자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죽으면 자살로 간주한다!'

10)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장기기증 및 이식 위원회의 현 의장. 쑨원 대학에서 반 파룬궁 문학을 연구하는 당위원회를 이끈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1년 5월 ‘파룬궁과의 싸움은 심각한 정치적 운동이다. 일부 활동 중인 수련자를 상대로 어떠한 자비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2005년 9월 그는 신장 자치구에서의 생체 이식술을 위해 광저우와 충칭에서 적합한 혈액형의 예비용 간 두 개를 주문했다. 여기서 도출되는 추론은 두 사람이 ‘여분’의 간, 즉 결국 사용되지 않은 간들의 주문에 따라 살해됐다는 것이다. 2003년 1월 논문에서 그는 그의 센터에서 온혈혈시간이 30초에서 8분 사이인 간이식 증례 13건을 언급했는데, 이는 사형집행장이 아닌 병원에서 사망을 시사한다. 2012년 그가 공동저술한 논문은 심정지한 21세와 41세 사이의 자발적 기증자의 간 채장 이식 10건을 언급했는데,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아직 자발적 기증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법제도 밖에서의 살인으로 취득한 간과 같이 볼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의 29쪽 이하를 참조. https://chinatribunal.com/wp-content/uploads/2019/06/MagnitskySubmission_OfficialsSurgcons_Final.pdf

47. 중국 장기적출 연구센터(COHRC) 보고서의 어떤 내용도 재판소가 증인에게서 직접 청취한 진술증거와 모순되지 않았고 그중 상당 부분이 직접 확인되었다.
48. COHRC와는 완전히 별도의 단체인 인권법재단(The Human Rights Law Foundation)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재판소의 판결 전문에 부록으로 첨부될 것이다. 재판소는 해당 보고서를 정확한 것으로 보아 취신하였으며, 그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a. 1999년 4월 27일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임위원회로 장쩌민이 보낸 '통지'가 발령됐다. 이 통지에 따르면, 파룬궁 수련자들의 평화로운 호소를 난폭한 박해로 대응하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장쩌민이었다. 통지문에는 중요한 신호가 담겨 있었다.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공격적이고 군국주의적인 언어 사용은 폭력적 탄압의 개시 신호였다.
 - b. 1999년 9월 뉴질랜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장쩌민은 당시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을 포함한 모든 나라 지도자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반 파룬궁 선전이 가득한 책을 한 권을 줬다. 그 책은 파룬궁 수련자들을 진압할 필요가 있는 위험한, 그리고(또는) 미친 사람들로 묘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 c. 장쩌민은 프랑스에 국빈으로 방문하기 전 1999년 10월 25일, 프랑스 신문 르피가로와의 서면 인터뷰에 응했다. 장쩌민은 파룬궁을 공격했으며, 파룬궁을 '사악한 이단'이라고 칭했다.
 - d. 2000년 9월 장쩌민은 CBS TV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철저한 심의 끝에, 우리는 파룬궁이 사악한 이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49. 가치 있는 기여를 한 증인 중에는 전 유럽의회 의원 에드워드 맥밀란 스콧도 있었다. 그는 파룬궁 수련자 차오둥과 뉴진핑 두 명을 인터뷰했는데 그 결과 차오둥이 투옥되었다(그는 그렇게 믿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고문 특별 보고관 맨프레드 노와크와 인권 변호사 가오즈성이 동석한 그 이후의 회의를 설명했다. 회의에 뒤이어, 가오즈성은 계획적으로 꾸민(그는 그렇게 믿었다)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 이 일로 가오즈성은 유럽의회와 미국의회에 서한을 보냈고, 그 후 감옥에 갇혀 자살을 시도할 정도까지 고문을 받았으며 지금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벌 체계 속으로 사라져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50. 중국어를 구사하는 전문 학자 겸 연구원 매튜 로버트슨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장

기이식 산업이 어떻게 2000년 이후 급속한 발전기간에 돌입했는지에 대해 말했다. 그중에서 특히 새로운 이식 병동, 병원, 연구 실험실의 개설, 새로운 의료 전문가 양성과 면역억제제 연구 개발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장기이식 능력을 급속하게 확대했다. 로버트슨은 중국 정부가 이 거대한 확장을 정당화할 장기의 공급원에 관해 어떤 적절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51. 웬디 로저스 교수는 윤리학자이자 강제장기적출 의혹을 연구하는 연구자이며 ETAC 이사회의 이사이나 파룬궁 수련자는 아니다. 그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이식 단체들과 전문가들이 2000년에서 2017년 사이에 작성한 연구 및 학술 논문이 대규모로 윤리 표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수감자에게서 나온 장기에 기초한 연구를 배제하지 못했거나 기증자의 동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것처럼 잠재적으로 중요한 일군의 연구성과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방면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재판소로서는 이상하게 여겨야만 한다. 암묵적으로, 재판소는 공개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없으며, 위와 같은 실패는 훨씬 어두운 현실을 암시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로저스 교수는 또한 국제 의료 기구들이 알려진 의혹에 직면해 보여준 무반응을 지적했다. 더 나쁜 것은 일부 국제 이식 외과 의사들, 특히 호주의 외과 의사들의 변명하는 듯한 행동과 진술이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비윤리적 - 혹은 더 나쁜 - 장기이식 행위의 영구화를 조장해왔을 수 있다.
52. 중화인민공화국의 파룬궁 수련에 대한 일반적 설명은 매우 명백하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중국 공산당 정권에 위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파룬궁 수련자들은 파룬궁 신념 제거 수단으로서의 육체적 손상과 비인간화 과정,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법망 밖에서의 살해 대상이 되었다.
53. 이 주제에 관해 재판소에 제시된 모든 증거를 기초로 하여, 재판소는 199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공산당은 오직 중국 인민에 대한 권력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파룬궁 수련자들을 인간에게 부여된 보편적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는 대상으로 취급했다는 확실한 결론에 이르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는 동시에, 자발적인 장기기증 시스템이 없는 가운데 설명되지 않는 대규모의 이식 병원 공급이 이루어졌다.

증거 - 강제장기적출에 대한 직접 증거

54. ‘강제장기적출(Forced organ harvesting)’은 재판소의 목적상, 장기를 떼어내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기 위해 동의 없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소는 강제장기적출에 대한 상당한 양의 직접적인 증거를 검토했으며, 그 세

부 내용은 판결전문에서 견본 방식으로 소개될 것이다.

55. 리후이거 교수는 그가 공동저술한 논문을 인용해, 1978년 장시성 출신 교사 중 하이위안이 어떻게 그녀의 '반혁명' 사상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지 언급했다. 사형은 경찰관들이 집행했는데, 그녀를 즉사시키지 말라고 명령받았다. 경찰관들은 '그녀가 죽기 전에 신장을 적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군의관들이 고품질의 신장, 즉 '생체에서 적출된 신장'을 원했기 때문이다.
56. 앤버 토티는 에단 구트만이 저술한 <학살(The Slaughter)>에 인용됐다. 그는 재판소 진술에서 1995년 우루무치의 병원 외과 의사로 있을 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처형장에서는 동시다발의 총격으로 다수의 사형을 집행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토티는 한 명을 제외한 10~20명이 모두 머리에 총을 맞고 사형당하는 것을 보았다. 토티가 수술을 명령받은 그 희생자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그의 머리는 식발당하지 않았고 민간인 복장이었으며 머리가 아닌 오른쪽 가슴에 총을 맞았다. 토티는 이것이 희생자의 심장박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짐작했다. 희생자는 손수레에 묶여, 토티와 그의 팀이 대기 중인 차량으로 실려 왔다. 토티는 '깊이 자르고 빨리 작업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토티에 따르면, 희생자는 마취되지 않았다. 토티는 간과 양쪽 신장을 들어냈다. 피부를 절개했을 때 피가 났으며, 그 사실로부터 토티는 희생자가 아직 살아 있다고 짐작했다.

57. 2002년 즈위안 왕 씨는 한 보안요원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일주일간 한 여성을 고문한 후 외과 의사들이 마취 없이 그녀의 장기를 적출하는 동안 보초를 섰는데, 그 여성은 소리쳤으며 특히 '파룬궁은 좋습니다'를 외쳤다고 했다.
58. '애니'라는 가명을 쓰는 여성은 2006년 3월 에포크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전 남편이 2001년과 2003년 사이에 2000명의 각막을 적출했으며, 이들은 주사로 '처형된' 뒤 장기를 적출 당한 파룬궁 수련자들이라고 밝혔다.
59. 리후이거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행해지는 아래 4가지 방법의 생체 장기적출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총격에 의한 불완전한 사형: 독극물 주사 주입: 리후이거는 주사 후 수십 초 이내에 어떻게 법적 의미의 사망이 일어날 수 있는지 설명했다. 장기

조달은 모두 독극물 주사 후 여전히 살아 있는 몸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장기적출에 의한 사형: 리는 2003년 발표된 논문을 참조하여 심장 적출의 요점을 묘사했다. 리는 2003년 이전 뇌사 기준이 없었다는 것은 뇌사상태의 공여자는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고동치는 심장이 적출로 인해 차가운 심장마비에 이른 것이 사망 원인이었다.

뇌사라는 구실 하에 장기 적출: 리는 뇌사 판정 후 기도삽관을 당했던 환자들의 관한 중국의 과학 논문들로부터 증거를 제공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뇌사는 자발 호흡이 안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환자들은 다른 곳에서도 허용될 만한 뇌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들은 의식이 없었다 해도 장기 공여 당시 필연적으로, 살아 있었다.

60. 재판소는 리의 증거 중 가장 중요한 측면은, 어떤 의미에서건 뇌사에 대한 공식적인 확립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것에 관련되는 것임에 주목했다.

증거 - 강제장기적출에 대한 간접 증거

61. 기록상 중국에서 사형집행으로 정치범의 장기를 적출한 최초 사례는 1978년에 일어났다.

62. 1984년 복수의 정부 기관과 부처는 공동으로, 수감자의 신체와 장기를 국가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공포했다. 재판소는 판결전문에 포함될 증거의 무게를 고려했다. 다음은 예시를 위한 것이다.

63. 2001년 1월, 체포된 류위메이는 이름과 주소를 밝히지 않으면 모든 장기가 적출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64. 2002년 5월 베이징 여자 노동수용소에 구금된 류후이충은,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도소 관리들로부터 파룬궁 수련자들은 예비용 부품으로 보관된다는 말을 들었다.

65. 2001~2005년 사이 어느 때,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호의적인 한 의사가 유신후이에게 몰래 말해주었다. '공산당을 거스르지 말라..., 당신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심장, 간, 비장, 폐가 적출당할 텐데, 당신은 그것조차 모를 것이다... 당신 수련자들의 장기는 최고다.'

66. 2005년, 이스라엘 이식학회 전 회장, 제이콥 라비 박사에게는 심부전이 심각한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는 의료보험회사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에 가서 특정 날짜에 심장 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것은 이식 행위 표준에 비추어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67. 재판소는 이러한 범주에서 증거를 제공한 모든 증인을 신뢰할 수 있음을 발견했으며 그들 중 누구에게서도 의심할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아무도 재판소가 분별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의도를 지니지 않았다. 그들의 진술증거는 종종 듣기가 괴로웠다.
68.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증거로부터의 결론.** 강제장기적출에 대한 적정한 양의 직접적, 간접적 증거가 있다. 이식행위의 '산업 규모'는, 일각의 주장대로,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증거가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왜 그런가?
69. 의료 서비스의 군국화가 관계된다. 이식에 관여하는 군과 경찰 병원 - '명한 대로 반드시 시행하라'는 정책을 가진 - 의 수량은 놀라울 정도로 많으며 군을 포함한 국가의 조직 구조에 관한 논거를 지지하고, 이식 서비스의 확장을 지원한다. 수감자들로부터 장기를 신속하게 적출하는 일은 분명히 자주 일어났다.
70. 모든 직접, 간접 증거에 기초하여, 재판소는 최소 20년 동안 중화인민공화국 여러 곳, 여러 상황에서 강제장기적출이 일어났으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확실한 결론을 내렸다.

증거 - 파룬궁과 위구르에 대한 의료 검사

71. 혈액검사는 장기이식의 전제조건이다. 수혜자에게 존재하는 항체가 공여자의 항원과 상호작용해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공여자와 수혜자의 혈액형이 일치해야 한다. 대규모 이식수술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혜자의 조직형에 맞는 공여자를 일치시키는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것이다.
72. 재판소의 판결전문에서 충분히 증명될 바와 같이, 수감된 파룬궁 수련자들은 '체계적으로' 혈액검사와 장기 검사를 받았으나 다른 수감자들은 검사를 받지 않았다. 메이터스와 킬고어는 그들의 보고서에서, 혈액검사나 장기검사를 할 건강상의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국은 파룬궁 수감자들의 건강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73. (전문가) 증인인 트레이 박사는 '구금된 파룬궁 수련자들은 어쩌서 세뇌, 강제 노동, 고문 혹은 고문치사를 당하는 한편 동시에 특별 신체검사(엑스레이, 초음파, 혈액검사 등)를 받았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유일한 합리적인 설명은 잠재적인 생체 장기 공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 데이터뱅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상정했다.
74. 트레이가 제기한 의문은 적절했지만, 그 검사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다.
75. 병원이나 교도소 당국은 검사받았다고 증언한 이들에게 이 검사의 목적을 알려주지 않았다. 강제장기적출에 대한 어떤 조사에 대해서도 그 목적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76. 우리는 왜 교도소 관리체계가 다른 수감 목적과 상충하더라도 앞서 묘사한 방식으로 누군가를 검사하는 것인지 물어봐야 한다. 채취한 혈액의 양은 다른 사람에게 수혈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명백하게 특정 그룹에 한정된 검사는 전염병 통제 등 역학적 접근도 뒷받침하지 못한다. 교도소 전체 인원이 검사를 받아야만 유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부 장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그 장기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평가하는 경우에만 쓰인다. 신체적 학대 전후에 장기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그러한 검사가 진행됐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증거조사 결과 신체적 학대는 수용소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검사의 일상적인 적용은 다른 목적, 특히 잠재적 장기공여 같은 목적을 위한 장기 상태 기본 평가와 더욱 일치한다.
77. 이러한 점 및 이 주제에 관한 다른 모든 증거에 근거하여, 재판소는 파룬궁과 위구르인 등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의학적 검사는 어떤 식으로든 확실히 그 해당 집단에 관련된다는 확실한 결론을 내렸다. 다른 수감자들은 검사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사 방법은 장기 기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것임을 높은 수준으로 암시한다. 초음파 검사를 사용했다는 것은 더욱더 검사가 내부 장기의 상태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혈액 또는 그 밖의 검사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증거 - 파룬궁에 대한 감금 및 고문

78.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판소는, 가능하고 현실적인 범위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의 일반적인 인권 침해 기록을 고려함 없이 증거에 접근했다. 이 같은 접근방식에 의하면 국가가 저지르는 특정한 악행-예를 들어 종교나 민족 집단에 대한 고문-의 증거도 모두 무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 또는 정부 승인 기관에 의한 모든 강제장기적출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금전적 이익, 이식기술의 개발, 파룬궁과 그 신념에 대한 억압, 장기적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파룬궁을 비인간화함으로써 그들을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것 등의 목적이다.

79. 재판소는,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구금되어 고문당하는 사람들의 규모와 범위를 이해하는 것은 - 별도 범주의 증거로 평가될 것으로서 이 단계에서는 단일 쟁점으로 평가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판소의 판단에 잠재적으로 중요하다는 관점을 취하였다.

중국 당국의 파룬궁 집단에 대한 처우를 볼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한다.

파룬궁에 가해진 다양한 범죄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는다.

그러한 행동이 행해진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드러낸다.

80. 파룬궁 수련자로서 재판소 법정에서 출석한 증인들은 모두 체포되거나 투옥되어 수감 중 고문당했던 경험이 있었다. 고문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역에서 일어났다.

81. 증인들은 모두 고문은 여러 형태의 체벌 형식을 취했다고 진술했다. 특정한 신체 자세 오랫동안 유지하기, 수갑을 이용해 높은 곳에 매달기, 천 벨트를 사용해 늘이기, 수면과 음식 박탈, 전기봉 충격(특히 생식기 부분), 강제 육체노동, 화장실이나 목욕시설 이용 금지, 약물 또는 의약품 강제 주입, 공개적으로 모욕하기(성폭력 포함), '자백서' 쓰기를 포함한 심리적 고문 등이다.

82. 고문 혐의 중 어느 것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묘사의 세밀함과 그들 경험의 유사성,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다른 부분에서의 경험들과의 일치성은 두드러진다.

83. 구타 방식의 신체적 학대는 파룬궁 수련자가 아닌 법정 출석 증인이 주장했다. 그밖에 위구르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룬다.

84. 관련 증인 진술 및 구두 증거는 모두 판결문 및 재판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진타오와 탕리주안의 증언은 재판소가 청취한 진술증거 중 매우 전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85. 류진타오가 2007년 9월 또는 10월에 대해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단지 그를 고문하기 위해 종종 강제 음식주입 튜브를 여러 번 안팎으로 잡아당겼다. 수감자 장귀빙도 강제 주입용 끈끈한 액체에 소변을 보았다. 낮에는 수감자 네 명이 합세했다. 그들은 그의 입에 대변을 밀어 넣었다. 변기 솔 손잡이를 그의 항문에 억지로 밀어 넣기도 했다. 그들이 손잡이를 너무 세게 밀어 넣어서 그는 배변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또한 그의 생식기에 손을 대기도 했고 극도로 뜨거운 난방 장치에 그의 등을 억지로 갖다 댔다. 밤에 찬물을 끼얹거나, 바늘로 찔러서 깨웠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를 바닥으로 끌고 가서 옷을 벗기고 찬물을 끼얹었다. 리위안은 종종 자기 배지의 뾰족한 끝을 이용해 류진타오의 손톱에 구멍을 냈다. 수감자들은 그를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장시간 가만히 앉아있도록 강제했다. 그들은 또한 그의 다리와 발이 심하게 부어오를 때까지 강제로 고정 자세로 서 있게 했다. 게다가 그들은 변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그가 바지에 대소변을 보게 만들 때도 있었다.

2011년, 탕리주안은 3년 6개월 동안 구금됐다. 그는 온갖 잔인한 고문 수법으로 고문당했다. 그는 식사도, 화장실 이용도 허락되지 않았으며, 가끔 바지에 소변을 봐야만 했다. 바지는 체온으로 말렸다. 샤워나 씻는 것도 전혀 허용되지 않았고 자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한번은 거의 거의 20일간 잠을 자지 못했다. 눈이 감기면, 그들은 펜촉으로 그의 몸과 다리를 찔렀다. 찔러서 생긴 붉은 핏자국은 짓물렀고, 살점이 바지에 붙기도 했다.

86. 모든 가용 증거에 기초하여, 재판소는 중화인민공화국 당국이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지지하며 수호한다는 이유만으로 구금자들에게 고문 행위를 가했다는 확실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파룬궁 수련은 결코 형사 범죄로 여겨지거나 형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재판소는 그러한 고문 행위가 오랜 기간에 걸쳐 중화인민공화국 곳곳에서 일어났고, 강제 노동행위는 특히 가혹하고 잔인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일반적으로, 고문 행위는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처벌, 배척, 굴욕, 비인간화, 비하 및 악마화를 통해 수련을 포기하고 비난하게끔 체계적으로 고안돼,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전반적으로 일관된 태도와 접근 방식을 드러냈다.

증거 - 위구르인에 대한 감금 및 고문

87. 파룬궁에 대하여 행해지는 것 외에, 중국 공산당은 신장의 이슬람 소수민족 -

위구르인, 카자흐인, 우즈베크인 - 을 중점적으로 탄압했다. 중국 공산당은 위구르인뿐만 아니라 티베트 불교, 가정교회 등 다른 종교 신자들에게도 제약 - 집단수용을 포함 - 을 가해왔는데, 이는 모두 중국 공산당의 중국화 정책의 일환이다.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중국 공산당이 이른바 불법 종교 활동을 막기 위해 '강경' 캠페인을 시작한 1996년에 일어났다. 중국 공산당은 '애국 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재교육 수용소'를 도입했고, 목격자 증언에 의하면 그곳에서 정치범에 대한 여러 형태의 고문과 살인이 발생했다.

88. 수용소에는 수십만 명이 있다고 추정되며, 아마 수백만에 이르는 위구르인이 수감 중일 수도 있다. 예단 구트만이 2018년 12월 재판소에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지난 18개월 동안, 문자 그대로 모든 위구르 남자, 여자, 어린이 - 약 1,500만 명이 - 혈액검사와 DNA 검사를 받았으며, 해당 혈액검사는 조직 적합 검사와 호환되는 것이었다.'¹¹⁾ 엔버 토티 박사는 재판소의 법정 진술에서 이 사실을 확증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위구르인들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는 2016년 6월경의 뉴스를 자세히 전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장기 거래를 위한 국가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이 수집한 표본은 '1700만 건이 넘는다'고 의심했다.

89. 재판소는 수용, 고문, 혈액검사가 이 집단 사람들에게 행해진다는 상당한 양의 증거를 접수했다. 그 모든 증거는 재판소의 판결전문에 담길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로서 위구르인 굴바하르 젤릴로바는 다음과 같이 상술했다.

그녀는 감옥에 도착하자마자 건강검진을 받았다. 감방에 배치되기 전에 발가벗겨져 혈액과 소변 샘플을 채취 당했다. 조금 후 교도관들이 그녀 머리에 검은 두건을 씌웠고, 그녀는 다른 곳으로 끌려가서 초음파를 비롯해 더 많은 혈액검사를 받았다. 그녀가 구금된 감옥 중 두 곳에서는 열흘에 한 번 의학검사를 받고 주사를 맞는 것이 일상이었다. 젤릴로바는 우루무치에 있는 다른 세 군데의 감옥에서 심문받은 후 구금됐다. 그녀는 구치소 세 곳 모두 사람으로 가득했고 더러웠다고 진술했다. 여성들은 모두 함께 누울 공간이 부족해 교대로 잠을 잤다. 그들은 음식을 거의 공급받지 못했다. 모두가 하나의 비누를 쓰며 1주일에 한 번만 샤워를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여성들은 몸에 염증이 생겼다. 그들은 지남력장애를 일으키는 알약을 받아먹고 월경 주기가 멈췄다. 그녀는 교도소 내 환경 때문에 많은 여성이 신경쇠약을 겪는 것을 목격했다.

90. 재판소에서 법정 진술한 위구르 증인들은 토티 박사를 제외하면 모두 감금된

11) <https://chinatribunal.com/wp-content/uploads/2019/04/EthanGutmann.pdf>, 3쪽

적이 있었는데 당시 가족 중 아무도 법적 절차를 통지받지 못했다. 이 위구르 증인들은 공식적으로 기소된 바도 없었고 적법절차에 따른 권리도 제공받지 못했다.

91. 재판소는 모든 관련 증거에 근거하여, 위구르에게 고문 행위가 가해졌다고 확실한 결론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고문 행위는 위구르인들에 대한 처벌, 배척, 굴욕, 비인간화, 비하 및 악마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고안돼, 위구르인들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전반적으로 일관된 태도와 접근 방식을 드러냈다. 위구르인들이 일상적으로 정기적인 의료검사를 강요받은 것도 분명했다.

증거 - 기독교인, 티베트인, 외국인

92. 덧붙여, 재판소는 모든 가용 증거로부터 파룬궁 수련자와 위구르인 이외에 확인 가능한 집단들이 - 가령, 개신교 신자들과 티베트 불교도들 - 파룬궁과 위구르인이 구금 및 고문당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금 및 고문당했다고 확실한 결론을 내렸다.

증거 - 강간 및 기타 성폭력

93. 재판소는 두 차례의 심리에서 상당수 증인으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의 교도소 체계 내에서 구금자에 대해 강간을 포함하여 성폭력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청취했다. 다음은 일부 증인들이 진술한 대표적인 증거이다.

94. 인리핑은 2001년 4월 19일 마싼자 강제노동수용소에 수감됐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40명이 넘는 정체불명의 남자들과 함께 갇혀 강간당했으며, 그중 한 명은 그녀가 당하는 수모를 비디오로 녹화했다고 한다.

95. 여성 구금자 바오쉐전은 한 여성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신체검사가 '그녀를 범하고 아기를 낙태시키기' 위한 용도로 실시되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그 여성이 '여러 차례 당했다'고 말했는데, 재판소는 이를 읽히거나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어떤 특정행위에 대한 절제된 표현으로 이해했다.

96. 앞서 언급한 중국 장기적출 연구센터(COHRIC)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파룬궁 수련자를 대상으로 자행한 다양한 잔혹행위, 그중에서도 강간, 윤간과 성고문을 포함한 목록을 제시했다.

97. 인권법재단(The Human Rights Law Foundation)의 보고서도 강간, 성폭행 등

의 행위를 나열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유명한 변호사 가오즈성의 목격 진술이 실려 있다. '내 영혼을 경악하게 한 부도덕한 행위들... 610 사무실의 직원과 경찰이 여성의 생식기를 공격하는 [그] 추잡하면서도 일상적인 관행. 거의 모든 여성의 생식기와 가슴이 성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거의 모두...남성이건 여성이건 그들은 고문 전에 발가벗겨졌다.'

98. 맥밀란-스콧은 증언에서 파룬궁 수감자들은 '점진적으로 잔인해지는 전기충격을 당했으며, 항상 생식기를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99. 재판소는 모든 관련 증거에 근거해, 중화인민공화국이 그들의 형벌 체계 내에서 파룬궁 수련자 등 남녀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강간을 포함하여 특유의 성폭력 행사를 조직했다는 확실한 결론을 내렸다. 생식기에 대한 전기충격기 사용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다.

증거 - 병원과의 전화 통화

100. 법정에서는 조사관들이 국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여러 다른 곳에 있는 병원의 의사들과 의료진들에게 걸었던 전화 통화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 전화 발신자들은 수신자들이 장기의 출처가 수감자인지, 특히 파룬궁 수감자인지 밝히도록 하기 위해 이식 수요자로 가장했다. 이들 통화는 다른 두 집단에서 진행했다. 첫 번째 일련의 통화는 2006년 WOPIFG 조사팀이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일련의 통화는 <피의 수확(Bloody Harvest)> 책에 상술된 내용으로 재판소에 제출됐다.
101. 특별히 중요한 일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통화는 재판소에 제출된 다른 출처의 증거들의 신빙성을 확인시켜주었다. 한 조사관은 약 80곳의 병원에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0곳의 병원이 파룬궁을 장기 공급원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 5곳의 병원은 파룬궁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14곳의 병원은 수감자들의 장기를 사용한다고 인정했다.
 - 10곳의 병원은 장기 출처가 비밀이라 전화상에서 의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
102. 통화에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심지어 정말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번역이 정확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을 고려했지만, 모든 가용 증거에 비추어, 그 통화들은 실제로 있었으며 정확하게 번역되었다고 확신했다.

103. 판결전문에 포함될 모든 증거에 근거하여, 재판소는 선임 외과 의사를 포함하여 병원 및 개별 의료진과의 전화통화가 이뤄졌으며 녹음된 통화의 번역이 정확하다는 확실한 결론을 내렸다. 나아가 재판소는 통화했던 그 병원들이 판매용 장기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장기들은 통화 당시 살아 있는 사람들의 것으로서, 발신자의 촉박한 일정에 맞추어 공급 가능했다는 확실한 결론을 내렸다.

증거 - 중화인민공화국 내 이식 활동의 규모: 짧은 대기 시간을 포함하여

104. 모든 나라에는 수행 가능한 장기이식술의 총수를 좌우하는 제약들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특히 사용 가능한 장기, 병원, 의사 및 기타 의료진들, 자금 및 해당 국가의 기반 시설 등이 포함된다.

105. 국제 장기이식 당국은 위에서 언급된 모든 사항과 관련해 데이터 수집의 투명성과 완전성을 기대한다.

106. 중국은 그러한 데이터를 사실상 국가 기밀로 간주해 왔다.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공식 데이터에 대하여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107. 중국 정부로부터는, 인증된, 외부에서 감사할 수 있으며 완전한 데이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진실한 데이터가 보여주는 중화인민공화국 내 장기이식 활동의 실상을 추론하려면 서로 다른 출처의 데이터들을 관련지어 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여러 출처의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는 것'이 합리적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숫자 데이터에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108. 중화인민공화국 내 장기이식 활동은 공식적인 정책에 힘입어 금세기 초반부터 급속도로 성장했다. 이러한 장기이식 활동의 증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그러한 성장의 증거를 요약해야 한다.

109. **장기이식술을 수행하는 병원의 수.** 최근 몇 년간 중국 내 장기이식 병원의 수에 대한 다양한 지표들이 있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증거는 재판소의 판결전문에 실릴 것이다. 중국에는 이식수술 허가를 받은 병원들이 146개소 이상 있을 뿐 아니라 총 700개소가 넘는 허가받지 않은 병원들이 대규모로 존재한다.

110. 재판소는 이들 병원 중 일부에서 일어난 매우 중요한 이식 활동의 증거를 제출받았다. 외과 의사들이 실시한 상당한 활동에 대한 증거는 재판소의 판결전문

문에 포함될 것이다.

111. 2013년 3월, 중국의 장기이식 역량 확대를 설계한 황제푸는 광저우일보에 ‘지난해(2012년) 나는 500건 이상의 간 이식을 실시했다’고 말했다(위의 각주 10 참조). 후술할 바와 같이, 이처럼 대량으로 장기이식 수술을 한 것은 황제푸 혼자만이 아니다. 2013년 9월 북경대학교 장기이식연구소 주지에 소장은 ‘우리 병원은 특정 한 해 동안 4,000여 건의 간 및 신장 이식을 실시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 당국이 인정한 최대 총 1만 2,000건의 이식 수술 중에 이 병원에서만 33%가 이뤄졌음을 나타낸다.
112. 장기이식 병원이 확장되는 비율 및 규모는 이식 활동의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왜냐하면 자발적인 기증자의 공급능력과 수행되는 이식수술의 급격한 증가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113. **장기 공여자 수와 출처.**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장기이식 초기 시절, 이식 장기는 오로지 처형된 죄수들에게서만 얻어진다고 여겨졌고 또 그렇게 알려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적인 압력으로 사형수 처형은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이식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2010년까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망자 장기기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고, 2014년까지는 시범 프로그램으로만 시행했을 뿐이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신장 및 간 이식 건수는 2010년 66건에서 2015년 7,081건으로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갔다. 자발적인 기증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시범단계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들 장기가 자발적인 기증자에게서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은 자명하다.
114. 2013년 9월 중국 장기이식대응시스템(COTRS) 관리 하에 정식으로 자발적인 기증 제도가 마련됐다. 2017년 공표된 장기기증 등록자 수는 37만 5,000명이었으며 이들 중 5,146명의 ‘적격’ 기증자(즉, 장기의 기증에 동의했거나 동의한 것으로 추정 또는 간주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가 나왔는데, 이는 1억 4,000만 명의 등록 기증자 중 1만 824명이 적격 기증자가 나와 0.008% 전환율을 보이는 미국보다 140배 높은 1.4%의 전환율에 해당한다.
115. 2007년 7월 중국 위생부는 모든 병원에 대하여 장기이식술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총 1,000개의 신청 병원 중 146개가 허가를 받았다. 허가 요건 중 하나는 병상 수로, 이를 충족하려면 해당 병원은 최소한 15개의 간 이식 전용 병상과 10개의 중환자실 병상을 갖추어야 했다. 신장 이식의 경우도 유사한 요건을 갖추어야 했다.

116. <최신 보고서(The Update)>의 저자들은 총 이식 건수의 추정치를 제공했다. 특정 병원에서 간 이식과 신장 이식이 수행되는지 여부에 근거하여, 간 이식과 신장 이식에 필요한 최소 병상 수의 조합을 추정하면, 승인을 얻은 146개소 병원에서 최소 5,775개의 병상 수가 나온다. 그리고 병상 전체가 가동되고 있으며 병상 당 연간 수술 건수는 12건이라고 가정했다. 재판소는 이러한 가정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가정에 따르면 매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시행되는 이식 수술은 약 6만 9,300(= 5,775 X 12)건에 이른다.
117. 소수의 외과 의사들에 의해 다량의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과 이식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면허 및 무면허 병원들의 수를 종합하여 보면,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매년 아주 많은 건수의 이식 수술이 이뤄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최신 보고서(The Update)>에서 킬고어와 메이터스, 구트만이 말한, 매년 6만 건에서 최대 9만 건의 이식 수술이 이뤄진다는 주장은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위에서 본 추정치 6만 9,300건도 이 범위 내에 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주장한 공식 수치의 약 6배에서 9배 정도다. 그렇지만 정확한 수치는 검증될 수 없고 앞으로 검증될 가능성도 적다. 하지만 매우 큰 수치인 건 분명하다.
118. 등록된 장기 기증자 풀(pool)에서 매년 일정한 수의 '적격'(즉, 사망) 기증자가 나올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매년 사망에 의해 '적격'이 되는 기증자의 수와 매년 수행되는 실제 이식 건수는 일치하지 않는다. 등록 혹은 '적격' 기증자의 수에서 나올 수 있는 수치보다 더 많은 수의 이식 수술이 이뤄진다. 더 이상 사형수를 장기이식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장을 고려하면, 이 상당한 수준의 불일치는 전혀 설명되지 않으며 타당한 해명이 요구된다.
119. 왕하이보[장기이식대응시스템(COTRS) 원장]는 2017년 2월, 대략 6만~10만 건에 달하는 이식 추정치는 '터무니없다'며 전 세계 나머지 다른 나라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장기이식 수치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은 그 수를 '증명하려는' 외부 조사관들의 몫이지 중화인민공화국의 몫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그가 주장하는 숫자이다) 300개에 달하는 병원이 이식수술을 시행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에서는 불과 169개의 병원만이 이식 수술을 하고 있다는 데 근거해 자신의 주장을 폈다. 그의 주장을 토대로 하면 미국은 매년 12만 건의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연간 12만 건의 장기적출이 전적으로 가능하다면 왕 원장의 주장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120. **짧은 이식 대기 시간.** 언제나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공여자 수보다 더 많다. 심지어 이식 프로그램이 생긴 지 오래됐고 홍보가 잘 이뤄진 나라들에서조차 그렇다. 자발적인 장기기증 제도 하에서, 장기 는 사전에 자신이 사망하거나 뇌사할 경우 장기를 이식해도 좋다고 동의한 사 람들로부터 그 사후에 공급된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긴 대기자 명단이 생긴다.
121. 일반적으로 장기 대기 시간은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될 수도 있다. 때로는 대 기 과정이 빨라질 수도 있으며, 필요한 며칠 만에 장기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가령, 영국 성인의 간 이식 대기 시간은 평균 135일이다. 신장 의 경우는 평균 대기시간이 2.5~3년으로 더 길다. 심장의 경우 대기시간이 수개월 또는 수년이며 폐의 경우 대기 시간이 더 길다.
122. 재판소가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대기시간은 세계 다른 국가들의 경우보다 훨씬 짧고, 2주 이하인 경우도 흔했다. 해당 증거는 재판 소의 판결전문에 포함될 것이다. 며칠 만에 이식을 받은 환자에 대한 제이콥 라비 박사의 보고도 여기 해당한다. 일본 언론인 유키하루 다카하시는 재판소 에 장기를 2주일 안에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 메시지에 관하여 설 명했다. 또 다른 증인 한 명도 2001년 텐진 제일병원에 갔을 때 간호사로부터 장기를 2주 만에 제공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123. 이러한 짧은 대기 시간은 통상적인 이식 관행과는 모순되는 것이며, 운이 좋 았다 는 식으로는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 없다. 이식용 장기를 제공받는 시기 를 미리 결정하는 것은 자발적인 장기기증에 의존하는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 다. 이렇게 단기간에 장기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은 주문에 따라 희생될 수 있는 살아있는 잠재적 공여자 은행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124. **현재 중국의 공식적인 이식 데이터의 진실성.** 2013년 9월 1일부터 중국은 중 국 장기이식대응시스템(COTRS)으로 하여금 출처를 불문하고 장기 할당에 관한 일 체 데이터를 관련 장기 등록부에 기록하도록 의무화했다.
125. COTRS 데이터에 따르면 - 국제적 찬사에 걸맞게도 - 2010년부터 2016년까 지 연간 자발적 기증자 사망인원은 34명에서 4,080명으로 1만 2,000% 증가 했으며, 이식된 신장 및 간은 2010년 63건에서 2016년 1만 481건으로 1만 6,636% 증가했다.
126. 이 데이터 세트는 매튜 로버트슨 등이 논문을 통해 분석했고 2019년 1월에

출판됐다.

127. 논문은 포렌식 통계 접근법을 사용해, 두 개의 중심 데이터 세트(적십자와 COTRS)가 조작된 증거라고 평가했다.
128. 논문에 제시된 통계 논의는 매우 중요하고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여서 재판소는 로버트슨 등의 논문에 대한 독립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용된 방법의 적절성과 대상 데이터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129. 영국 왕립학술원 회원인 데이비드 슈피겔홀터 교수는 로버트슨 외 연구진이 이용한 방법론이 적절하다는 일치되는 의견을 보였다. 슈피겔홀터는 데이터 분석을 재실행했고, 결과는 로버트슨 외 연구진들의 결과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또한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그렇게 데이터가 들어맞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130. 따라서 COTRS와 적십자가 제공한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조작됐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131. 만약 이식 활동 데이터가 그러한 식으로 조작될 수 있다면, 중국 당국이 제공하는 데이터에서 무엇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일까? 본 재판소는 로버트슨 외 연구자의 접근법에 대해 슈피겔홀터가 독립적으로 검증한 결과에 따라, 메이트스와 킬고어, 구트만이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독자적인 책에(최근 하나의 보고서로 업데이트되었다) 축적한 증거를 더욱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132. 중국이 왜 데이터를 조작하려 했을까를 물어보는 것은 적절한 질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처음에는 이식 분야에서의 성공을 널리 알리고 싶어 했다고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세계무대에서 이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 나라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나중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이식 활동 건수와 출처를 알 수 있는 장기의 수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워지자, 처음 원했던 그런 세간의 관심을 원치 않게 됐다고 가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합당하다.
133. 재판소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모든 종류의 이식용 장기를 위한 대기 시간이 짧아야 몇 달 흔히 몇 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대기 시간은 2주밖에 안 된다. 다른 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대기 시간의 차이는 설명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은, 병원과 이식 전용 의료시설 및 인력 같은 물리적 인프라의 대규모 성장과, 이러한 인프라

라의 발전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자발적 기증 시스템 도입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재판소는 중국의 공식적인 이식 통계가 조작됐다고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데이터'를 무시하고 가장 최근의 추정 시점에서, 매우 많은 건수의 이식 수술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시행됐다는 확실한 결론을 내린다. 또한 연간 6만~9만 건의 수치를 믿을 만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 수치를 2017년 공식적인 적격 기증자 수인 5,146명과 비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간격이 생긴다. 시행된 이식 건수가 가능하려면 - 가장 최근의 추정치가 나온 연도를 전후해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조직 적합 장기의 공급원들이 존재해야 한다. 이는 결국 중화인민공화국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일군의 장기 공여자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증거 - 파룬궁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공개 성명

134. 재판소는 판결전문에서 파룬궁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부 고위 인사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광범위한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다음은 발췌한 두 가지 사례다.
135. 장쩌민은 파룬궁을 '50년 전 건국 이래 이 나라에서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게다가 1999년 6월 7일 장쩌민은 파룬궁을 '해체하라'는 분명한 명령을 내렸다. 1999년 11월 30일, 리란칭은 장 주석의 지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적으로 파탄시키며, 육체를 소멸하라.'
136. 1999년 9월 초 뤼간(610 사무실의 수장)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으로 밝혀진 자는 비밀리에 체포해 죽을 때까지 종신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137. 모든 관련 증거에 근거하여, 재판소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그 지도자들이 오로지 파룬궁 수련과 그 신념 및 가치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박해, 투옥, 살인, 고문, 모욕을 적극적으로 선동했다는 확실한 결론을 내렸다.

중화인민공화국에 유리한 증거 및 주장

138. 재판소는 중국에 유리한 증거를 거의 접하거나 제공받지 못했다. 수년에 걸친 중화인민공화국의 단순 부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39. 중국에 대해 호의적으로 말하는 의사들. 중화인민공화국의 이식 관행에 대해

호의적으로 말한 4명의 의사가 있다. 다음과 같다.

제러미 채프먼 교수
필립 오코넬 교수
프랜시스 델모니코 박사
캠벨 프레이저 박사다.

140. 적어도 이 중 한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초대로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 잘못된 점이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
141. 그러나 이 의사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중화인민공화국의 과거 혹은 현재 이식 관행에 대한 자신들의 지지를 정당화하거나 적절하게 설명해주는 어떠한 증거를 - 그들이 검토한 기록이나 환자와의 면담 형태의 - 제시하지 않았다.
142. 이 의사들 모두 재판 절차에 참여하도록 재판소의 초대를 받았다. 그들이 참여했다면 재판소의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초대를 거절했다. 나아가, 그들은 각자 호주 정부 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에 직접 기고했지만, 그들의 기고는 ETAC의 검토 대상이 됐다. ETAC는 그들이 자신들이 말한 바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않았으며, 이식 수술에 관한 그들의 방법론이나 경험은 비판받을 수도 있음을 밝혀냈다¹²⁾.
143. 또한 재판소는 이식 외과 의사들의 국제기구인 세계이식학회(The Transplantation Society, TTS)에 의견을 구했다. 세계이식학회의 답변은 장기이식 시행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식 발표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으며, 조사 및 확인은 협회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재판소는 이러한 입장이 TTS 웹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에 어긋난다고 본다. 웹사이트상 TTS의 정책 및 윤리 목표에는 '사람 간 장기이식 시행에 있어서의 글로벌 리더십 제공'이라거나 '임상 진료와 과학적 조사를 위한 윤리적 기준 향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44. 세계이식학회와 세계보건기구(WHO)의 대표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인체 장기이식 시스템의 최근 변화, 특히 중국 장기이식대응시스템(COTRS)과 자발적 기증자 제도의 발전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들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외부의 비난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사형수 장기를 사용하던 데

1)<https://endtransplantabuse.org/australian-parliamentary-report-compassion-not-commerce-an-inquiry-into-human-organ-trafficking-and-organ-transplant-tourism/>
https://chinatribunal.com/submissions/response-compassionnotcommerce_austgovtreport_rogers_matas_hughes/

서부터 장기 출처가 전환되는 것을 지지했으며 처형된 죄수들이 더 이상 이용되지 않는다고 암시했는데, 이러한 지지를 정당화하는 중국의 공식적인 수치(이 수치에 대한 비판은 앞서 본 바와 같다)들을 믿는 것 같다.

145.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보건 관련 UN 전문기관이다. WHO는 다자간 이해 당사자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어 정치적 현실에 민감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WHO의 입장은 주로 세계이식학회(TTS)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왔다.

146. 그러나 재판소에 현출된 증거와 특히 자발적인 기증자와 시행된 이식 건수 사이의 불일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비윤리적 행위가 중단됐다는 그들의 낙관론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로버트슨 외의 연구원이 밝혔듯이 중화인민공화국 공식 이식 통계의 신빙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두 기관의 입장을 지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들 기관은 윤리적 의료행위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왔는데, 예를 들어, 2010년 5월, WHO는 제63회 세계보건총회에서 신체부위 구매를 비난하고 장기기증센터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시스템을 요구하는 '인체 조직과 이식에 관한 WHA63.22'를 채택했다.

147.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정부 위원회들.** 현재까지, 어떤 공식적인 정부 기관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장기 이식 행위의 범죄성에 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148. 몇몇 정부들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제기되는 혐의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가용 증거의 상당 부분을 진지하게 검토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를 포함해¹³⁾ 다

13) 영국은 - 다소 정형화된 방식으로 - 중화인민공화국이 분명 사형수로부터 적출된 장기를 사용하였으리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장기적출이 일어났거나 현재 일어나고 있음을 입증할 증거는 불충분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재판소는 하원의원 바로네스 골디 및 마크 필드가 대정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과정에서(역주: 의원내각제를 택한 영국에서는 다수당의 의원들이 행정각부의 장관으로 입각된다) '분석'과 '평가'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가용 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지 않고는 정부가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없었으리라고 추정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재판소 고문은 마크 필드 외무부 장관에게 분명 존재할 분석이나 평가를 제공받고자 재판소의 4월 공판에 출석해 증인 - 마지막 순서의 증인 - 이 되어 주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는 재판소가 가능한 모든 가용 증거를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기 위함이었다. 외무부를 대표하는 한 인사가 마지막 공판기일 중 일부에 참석했지만, 재판소가 이용할 수 있는 증거나 분석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여하려고도, 발언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분명히 존재하리라고 추정되는 - 분석은 전혀 제공되지 않았고, 상원과 하원에서의 질의에 대한 장관들의 답변은 WHO에 의존하는 외에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재판소는 강제장기적출의 실행 여부에 관한 가용 자료에 대하여 엄격한 분석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의심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만약 그러한 분석을 실시했다면, 기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 재판소에 제공하지 못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그러한 분석을 거쳤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비록 영국 정부의 발언이 표면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옹호하는 것이더라도 이런 발언은 증거가 아니다. 그런 발언은 어떤 증거를 밝히지도 못하고, 분석 방법으로서도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른 몇몇 정부들은 알려진 사실과 증거를 검토해 판단하려 하지 않고 혐의를 묵살하려 해왔다. 재판소의 판결전문에는, 일부 정부들이 얼마나 쉽사리 증거가 불확실하다고 봄으로써 불편한 진실에 대한 확인을 회피하는지에 관한 증거가 포함될 것이다. 정부 보고서들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재판소가 검토한 것과 같은 다양하고도 많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 또, 강제장기적출의 발생 여부에 대해 정부 보고서들이 표명한 의혹들도 검증,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증거 분석이나 설명이 없다. 그러나 2016년 미국의 결의안은 다른 정부들의 표명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승인 장기적출을 - 거의 증명된 것처럼 - 비난했다.

149. 재판소는 - 영국, 미국, 호주가 진행했음이 확실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첩보활동에서 얻은 정보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제기된 혐의가正当한지 아니면 완전한 거짓인지를 밝혀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만약 후자라면, 적어도 재판소가 그러한 혐의가 거짓임을 입증하는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졌을 것이다. 재판소는 그러한 정보 자료가 없다는 점에 토대하여 행동할 수밖에 없다.

150. 따라서 재판소는, 강제장기적출의 발생을 확신할 수 없다는 영국이나 호주¹⁴⁾ 같은 나라들의 평가가 중화인민공화국에 유리할 수 있다고는 인정하나, 실제로 그와 같은 평가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유리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재판소는 정부 위원회의 보고서들 등으로부터는 - 어느 쪽이건 - 그 어떤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전반적인 반응

14) 2018년 호주 정부의 외교국방·통상 공동상임위원회 인권소위원회 보고서, '상거래가 아닌 연민 (Compassion Not Commerce)'은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명한 세 명의 의사가 저술한 것으로 실질적인 활동(역주: 실질적 내용이 없는 막연한 부정은 아니라는 뜻)이었다. 이 위원회의 결론은 ETAC의 상세한 논평의 대상이 되었다. 재판소는 이 보고서에 대한 ETAC의 논평이 - ETAC이 재판소에 재판에 의뢰한 기관임을 고려하여 필요한 모든 주의를 기울였다 - 보고서에 표현된 우려들, 다시 말해 통계, 전화 통화, 혈액 검사 - 전염병 때문이라는 이유로, 수행된 이식 수술 건수, 의사들의 동반한 중화인민공화국 방문의 중요성, 이른바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자발적 기증 제도 등에 관한 우려들을 모두 불식한다고 본다. 중화인민공화국에 호의적인 발언을 한다고 알려진 의사들은 증거를 대지 못함으로써 위 보고서의 결점을 드러냈는데, 이는 <최신 보고서(Update)>의 분석에 대한 다양한 오해가 보여준 결점을 거듭 반복한 것이다. 재판소는 호주 외교통상부가 2016년 10월 상원 위원회에 제출한 플레처 씨(Mr. Fletcher)의 영상 보고를 검토하였는데, 혐의의 신빙성에 대한 그의 의심과, 어떤 존중할 만한 인권 단체도 그 혐의를 신빙성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 명백한 과장임을 발견했다. 그와 같은 발언은 호주 외교통상부가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그의 주장과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 재판소는 대체로 소속 부처를 대변하는 플레처의 주장, 즉 혐의를 지지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주장은 확실성이나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위 보고서 - 분석을 거치고 ETAC의 반박내용을 종합해야만 활용 가능한 - 는 재판소가 참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증거도 제공하지 못한다.

151. 본 판결문의 앞부분에 언급된 바와 같이, 거의 20년 동안 중화인민공화국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제 검토된 증거를 가지고 이 문제로 되돌아가 세계 시민의 상식과 경험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152. 비록 많은 시민들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강제장기적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지만, 사실 2001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많은 양의 정보가 공개된 바 있다. 바로 왕궈치 박사의 상세한 보고서가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산하 무역소 위원회에 제출됐던 때이다¹⁵⁾. 소위원회에 중화인민공화국 측 대표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워싱턴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이 베이징에 해당 청문회와 왕궈치 박사의 발언에 대해 보고했을 것은 분명하다. 앞서 열거한 다른 모든 공식 조사와 심리에 대해서도 같은 확신을 가지고 동일하게 말할 수 있다.
153. 마찬가지로, 점점 세상에 알려지는 장기적출 혐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전 세계 언론 보도들 - 비록 드물었지만 - 에 관하여도,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은 베이징에 모두 보고 - 그들의 업무에 속한다 - 했을 것이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은 2008년 에스토니아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에서 유출된 문서가 보여주듯이 그 기간 내내 국제적으로 파룬궁을 반대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것이 명백하다.
154. 2001년부터 현재까지 중 상당기간, 중화인민공화국이 전 세계와 전 세계 의료 전문가들을 상대로 (최소한) 처형된 사형수들로부터 장기를 적출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 역시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없이 모든 정보는 베이징에 전해지고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재판소가 검토했지만 단순한 주장일 뿐 뒷받침 증거가 없어 증거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2018년 호주 정부 위원회 보고서(‘상거래가 아닌 연민’)에 대하여는 응대를 한 바 있다. 어떤 경우에도 강제장기적출 혐의 제기에 대한 대응은 일절 이루어지지 않았다.
155. 재판소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무언가 더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냥 무시해야 할까? 중화인민공화국은, 가령 미국에서 일반 범죄로 기소된 개인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상응하는 모종의 묵비권을 부여받아야 할까?¹⁶⁾ 재판소는, 예를 들어, 재판소의 참여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부작위로부터 어떠한 추론을 이끌어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혐의의 중대성 및 혐의가 제기되어 온 오랜 기간을 고려하면 다른 상식적 반응이 요구될 수 있

15) 위 8번 문단 참조

16) 영국에서 진술거부권은 사실상 폐지됐다. 왜냐하면 심문 중에 침묵하거나 재판에서 증거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그러한 침묵에서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 가상의 가정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가령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슬람교도들이 리즈나 필라델피아(무작위로 선택한 도시 이름임)에 있는 교도소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세간에 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그러한 혐의는 완벽하게 존경할만한 단체가 주장하고 있고 여러 나라의 정부 위원회에서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가정해 보자. 단순한 부인만이 영국이나 미국이 할 수 있는 전부일까? 그들의 말이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이유로? 행여 뭔가 더 많은 것을 한다면 무례함(역주: 거짓 혐의 제기)을 예우하게 되는 걸까? 아니면, 도대체 누가 새빨간 거짓말을 지어내고 그럴듯한 주장을 했는지 찾아 배상을 청구하고, 교도소 문을 활짝 열어젖혀 적절하고 중립적인 일단의 감시자들에게 모든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알 수 없다.

156. 재판소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항변하는 혐의에 대하여 근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반박에 실패했다는 점으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에 불리한 추론까지 끌어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결론에서는 그와 같은 실패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한다.

사실과 법률에 근거한 재판소의 종합적 결론

157. 강제장기적출에 대한 1차 결론.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어려운 이유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이 문제를 조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개를 꺼림으로써 그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베일에 싸여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이 나라의 규모와 복잡성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어려움들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불리한 증거로 보태질 수는 없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추론과는 무관하나, 확실히 중화인민공화국이 개방적이었을 경우에 비하여는 추론을 더 어렵게 만든다.
158. 이러한 종류의 어려움은 의심과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그와 같은 불확실성이 더 쉽고 안전한 해결책이 된다면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 데이비드 킬고어의 말처럼 정부들이 불확실성만을 표현한다면 - 중화인민공화국에 불리한 진실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불편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거가 없는 관심 포인트들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도, 추론의 어려움은 의심과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의문들 - 예를 들어, 어떻게 전문가들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가? - 이 증거가 아니라 추측에 준한 방법으로만 답변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의심과 불확실성으로 전환될 수 있다.

159. 그러나 어려움이 불가능은 아니며, 결정을 위임받은 이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현실적 어려움 및 벗어나기 힘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용 증거에 대한 검토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말이다.

160. 재판소가 직면한 가장 명백한 '어려움들'을 질문 형식으로 열거해 살펴본다.

- a.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불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의 증언을 어떻게 진실하고 정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 b. 중화인민공화국과 같은 규모의 국가에서,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개인 또는 개별 지역 기관(일반적으로 병원)의 행위를 중앙 정부가 통제했다고 추론하거나 결론 내릴 수 있는가?
- c. 더 일반적으로는, 일어난 일이 단지 '망나니 같은' 기관이나 개인의 소행일 가능성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는가?
- d.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자행된 행위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앙 정부 또는 중국 공산당이 그러한 주관적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 e. 중화인민공화국 혹은 중국 공산당 자체의 심리상태가 증명되어야 한다면, 개인적 심리상태나 사실상의 집단 정신상태 조사를 위해 먼저 정부 또는 공산당의 최상층부에 있는 개인들에 대한 접근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러한 증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 f. 또한 매우 일반적인 질문으로, '큰 거짓말(Big Lie)'을 하고도 책임을 모면한 것으로 잘 알려진 다른 전체주의 국가들처럼, '큰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 국가에 대해, 재판소는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따금 장기이식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발표는 이식 수술에 사형수의 장기를 사용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때였다. 다른 발표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 불리한 내용은 모두 선전이고 거짓말이고, (현재는) 모든 장기가 자발적 기증자 또는 적절하게 통제되는 사후 기증제도에서 나온다면서 파

론공 수련자들을 비난해왔다. 그토록 거대한 국가가 그런 단호한 진술을 할 때 재판소는 염려해야 하는가? 공교롭게도 이 판결문을 쓸 시점에, 대서양 양쪽의 시민들은 일견 거짓말의 본색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급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빠져나가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다¹⁷⁾. 전체주의 국가와 개방되고 정직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가의 행동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비록 진실이 지도자들을 끌어내리지는 못하더라도, 모든 국가의 시민들은 지도자들의 거짓에 대항할 수 있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 그러한 거짓이 아무리 단호히 표현되더라도 말이다.

161. 이들 어려움과 질문에 대한 간단한 - 또한 분명한 - 대답은, 통상의 조사에 서라면 주어졌을 것이나 주어지지 않은 것은 재판소의 염려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거짓말이나 비협조를 이유로 중화인민공화국에 불리한 추론을 이끌어내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는 말이다. 재판소가 해야 할 일은 - 수학자, 양자물리학자, 엔지니어 등이 기존에 알려진 일련의 탐구 과정에서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처럼 - 다른 곳을 살펴보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 인지를 검토하며, 그 다음 연역적 추론의 길을 따라 가면서 더 많은 가용 자료가 확보된 조사에서와의 동일한 엄격함으로 그 결론을 검증하는 것이다.
162. 이를 위해,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의 불투명함이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인권법 침해 사례들로 인하여 판단이 오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재판소는 일부 결론의 경우 범주별로 검토하여 판단을 내렸다. 가능한 한 이러한 범주별 결론들은 해당 범주의 증거들만을 기초로 하여, 문제의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훌륭한 인권 기록을 가진 어떤 가상의 국가라고 가정하고, 가능한 한 파룬궁이라는 구체적 고려사항까지 배제한 채 도출된 것이다.
163. 파룬궁에 대해 대부분 또는 전혀 초점을 두지 않은 세 가지 범주의 증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즉, 장기 이식 수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묘사, 장기 이용 가능성 및 짧은 대기 시간을 알려주는 병원과의 전화 통화,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이식 활동 규모다. 해당 내용의 요약은 판결전문에 실릴 것이며, 본 판결문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축약하여 정리한다.
 - a. 제대로 작동하는 이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운송 및 장기유통시스템이 필요하며, 이식 외과 의사, 내과 의사, 간호사와 기술자 등 숙련된 팀이 필요하다. 이식 수술은 광범위한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고도로 통합된 과정이다.

17) 영국의 EU 탈퇴에 대하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영국의 양당 모두 적지 않은 규모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지도자들은 실각하지 않았다.

- b. 선임 외과 의사를 포함해 병원 및 개별 의료진과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 통화한 병원들은 판매용 장기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한 장기들은 통화 당시 살아 있는 사람들의 것으로서, 발신자의 촉박한 일정에 맞추어 공급 가능했다.
 - c.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매우 많은 건수의 이식 수술이 시행되어 왔다. 재판소는 연간 6만~9만의 수술 건수를 신뢰할 만한 수치로 평가했다. 이 수치를 2017년 공식적인 적격 기증자 수인 5,146명과 비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간격이 생긴다. 시행된 이식 건수가 가능하려면 - 가장 최근의 추정치가 나온 연도를 전후해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조직 적합 장기의 공급원들이 존재해야 한다. 이는 결국 중화인민공화국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일군의 장기 공여자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164. 이러한 결론들로부터 재판소는, 파룬궁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증거가 조금도 문제가 없는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중화인민공화국에는 병원에 연계되어 수요에 따라 장기가 적출될 수 있는 다수의 장기 공여자들이 존재해 왔다는 확실한 결론에 이르렀다.
165. 이러한 결론들을 토대로, 앞서 본 강제장기적출에 대한 직·간접적 증거와 의학적 검사에 대한 증거에 기초하여 살펴본다.
- a. 강제장기적출은 최소 20년 동안 중화인민공화국의 여러 곳, 여러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 b. 파룬궁과 위구르인 등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의학적 검사는 어떤 식으로든 확실히 그 해당 집단과 관련이 있었다. 다른 수감자들은 검사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사 방법은 장기 기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것임을 높은 수준으로 암시한다. 초음파 검사를 사용했다는 것은 더욱더 검사가 내부 장기 상태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혈액 또는 그 밖의 검사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166. 이러한 결론들을 앞서의 결론들과 결합해 보면, 수요에 따라 장기를 적출할 수 있는 다수의 공여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병원에 연계되어 있었다는 결론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강제장기적출이라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오랜 관행 및 많은 파룬궁과 위구르인들이 강제로 장기 상태에 초점을 맞춘 의학적 검사를 받았던 사실과 일치한다.

167. 이제 파룬궁 및 위구르인 고문에 대한 결론, 그리고 파룬궁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공개 발언 증거를 살펴본다.

a. 중화인민공화국 당국은 다른 특별한 이유도 없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지지하며 수호한다는 이유만으로 구금자들에게 고문 행위를 가했다. 그러한 고문 행위는 오랜 기간에 걸쳐 중화인민공화국 곳곳에서 일어났다. 일반적으로, 고문 행위는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처벌, 배척, 굴욕, 비인간화, 비하 및 악마화를 통해 수련을 포기하고 비난하게끔 체계적으로 고안돼,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전반적으로 일관된 태도와 접근 방식을 드러냈다.

b. 고문 행위는 위구르인들에게도 가해졌으며, 여, 위구르에게 고문 행위가 가해졌다고 확실한 결론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고문 행위는 위구르인들에 대한 처벌, 배척, 굴욕, 비인간화, 비하 및 악마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고안돼, 위구르인들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전반적으로 일관된 태도와 접근 방식을 드러냈다. 위구르인들이 일상적으로 정기적인 의료검사를 강요받은 것도 분명했다.

c. 중화인민공화국과 그 지도자들이 오로지 파룬궁 수련과 그 신념 및 가치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박해, 투옥, 살인, 고문, 모욕을 적극적으로 선동했다.

168. 이러한 결론들을 앞서 도달한 결론들에 더하여 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아무런 장애 없이 파룬궁 수련자의 운명을 좌우지할 수 있었고, 손쉽게 이들을 중화인민공화국 병원에 연계시켜 수요에 따라 강제로 장기를 꺼내 쓸 수 있는 장기 공급원으로 이용할 수 있었음이 분명하다.

169. 이러한 단계별 추리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설명되지 않는 출처로부터의 장기 공급망이 수년에 걸쳐 존재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그리고,

투옥된 파룬궁 수련자들은 이용 가능한 공급원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확인된 공급원이 없는 상황에서

강제장기적출을 위한 장기 공급원(아마도 주요 공급원)으로 사용된 것은 파룬궁이었음이 확실하다.

170. 나머지 범주의 특정 증거 - 황제푸¹⁸⁾에 대한 증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공산당 관리들로부터의 증거 - 는 이 결론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반대다. 그리고 이 결론은 앞서 '일반적 배경' 항목에서 증거를 검토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199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공산당은 오직 중국 인민에 대한 권력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파룬궁 수련자들을 인간에게 부여된 보편적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는 대상으로 취급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는 동시에, 자발적인 장기기증 시스템이 없는 가운데 설명되지 않는 대규모의 이식 병원 공급이 이루어졌다.

171. 위구르인들의 경우, 강제장기적출이 일어났다는 결론에 도달할 만큼의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수용을 통해 완전한 통제를 구축, 유지하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의지 앞에 위구르인들은 분명히 취약하다. 위구르인들이 장기은행으로 이용될 수 있는 취약점도 명백히 존재한다.

172.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위반한 여러 인권법 위반 사례들에 대한 지식은 적용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결론에 이른 지금 단계에서 보면, 해당 결론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인권 기록이 일치함을 굳이 인정하지 않을 필요가 없어 보인다.

173. **강제 장기적출의 지속 여부: 종료되었는가?** 주문에 따른 장기 이용 가능성에 관한 가장 최근의 증거는 2018년 전화 통화¹⁹⁾와 2017년 한국의 다큐멘터리²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은 동일한 규모로 강제장기적출이 지속된다는 사실 증명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다(반증으로 작용하지도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시스템이 증거에 기초한 국제적인 우려와 비판, 강제장기적출 행위가 증명됐다고 주장하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작동해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멈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다수 인민들의 생계는 그 시스템에 달려 있기도 하다. 나아가, 투옥됐지만 장기가 적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제공한 고문의 증거들을 보면, 당국은 장기를 적출해 팔겠다는 순수한 상업적 목적 이외에도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에 있어 다른 목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장기 공급원에 대한 접근성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식 수술 분야에서 엄청난 기량을

18) 각주 7) 참조

19)

https://chinatribunal.com/wp-content/uploads/2019/06/WOIPFG-Investigation-Report_NewEvidence_2018.pdf 20 <https://vimeo.com/280284321>

20) <https://vimeo.com/280284321>

쌀을 수 있었던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강제장기적출의 혐의에 가려져 있지만 - 중화인민공화국은 전 세계 이식학계에서 부상하게 되었으며, 세계 이식학계의 상당수 의사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상거래가 아닌 연민’ 보고서에 대한 호주 위원회의 청문회에서처럼). 그러한 관행이 중단됐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그 지속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74. **지리적 분포:** (최종 판결문에 포함된) 병원·교도소 지도는 고문 및 의학적 검사를 받은 사람들이 지목한 병원, 그리고 조사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장기를 주문 가능하다고 밝힌 병원들을 표시하고 있다.
175. 증거와 논증 및 추리에 따라, 증언 신빙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이 재판소로서는 전혀 기쁘지 않다. 이 결론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끔찍한 죽음을 맞았고, 더 많은 이들이 비슷한 방법으로 고통 받을 수 있으며, 가장 오랜 문명국가로서 존중과 배움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를 국가를 장악한 집권세력이 극악무도함을 서슴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유죄 여부에 관한 판단

176. **해당 범죄 사실:** 우선, 국가나 국가승인 기관에 의한 강제장기적출 사실이 개인 범죄나 국가 책임을 다루는 법원에서 강력한 증거에 의해 밝혀졌는데도, 법원이 기술적 이유로 사건이 속행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면, 이것은 아주 기이한 일이 될 것이다. 시민들이 이 일을 알게 된다면, 세계 질서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들에게 아무런 보호도 제공하지 못하며 문제의 국가는 완전히 면책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증거를 쥐게 된 법원은 반드시 법령과 규정에 부합하는 사법권을 찾아내야 함을 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원은 잊혀지거나 대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의 범죄에 대한 강력한 증거에 직면할 때마다 전 세계의 ‘관여되지 않은’ 국가가 부딪치는 문제는 바로 이런 분명한 사실이다. 국가들은 그러한 증거를 법률 당국에 회부하게 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고, 데이비드 킬고어가 말한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놓고 부정한다. 본 재판소에 기소되어 사실로 인정된 중대한 혐의들이 일단 적절한 법원에 사건으로 접수되기만 하면, 해당 법원은 사법권은 행사의 방법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문제는 그때에 어떤 범죄(들)로 기소할 것인가이다.
177. 재판소는 앞서 기술한 사실 판단 및 제공받은 법적 의견과 자문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178. **제노사이드**: 재판소는 무언가 육체적 행위가 행해졌고 그것이 제노사이드를 시사한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 제노사이드 협약에서, 또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관한 로마 규정에서 거듭 밝힌 ‘제노사이드’의 정의에 비추어 살피건대, 재판소는 집단 구성원들이 살해된 사실²¹⁾, 집단 구성원들이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²²⁾, 그리고 그 집단의 전부 또는 부분적인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계획된 생활조건을 그 집단에게 고의적으로 부과했다는 사실²³⁾의 존재를 확신한다.
179. 재판소는 또한 파룬궁과 위구르인들이 각각 법적인 개념으로서의 ‘집단 (group)’을 구성한다고 본다. 나아가 이들은 하나 이상의 보호되는 집단, 즉 제노사이드 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보호집단인 국가, 민족, 인종 또는 종교 집단²⁴⁾에 해당한다.
180. 범죄가 성립하려면, 물리적 행위와 심리적 고의가 결합되어야 한다. 재판소의 질문은 양심수들에 대한 강제장기적출이란 방식으로 집단학살 범죄가 저질러졌는가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정의된) 집단학살 범죄를 실제로 저질렀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강제장기적출이 이들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수행됐어야 한다. 재판소는 요건에 부합하는 ‘특별한 의도’를 찾을 수 없었다.
181. 재판소는 최근 20주년이 지난 1999년 6월 7일, 장쩌민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천명한 파룬궁 제거의 의도에 주목했다. 이와는 별도로, 재판소는 잠재적으로 엄청난 수익성을 가진 장기이식 수술 시장의 발전에 주목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가닥의 사건들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만나거나 합쳐지게 됐는지는 재판소의 가용 정보와 증거만으로는 명확히 알 수 없다. 이 점 때문에 결국 재판소는 양심수들에 대한 강제장기적출에서 ‘특별한 의도’의 존재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182. 재판소가 주목한 점은, 일부 파룬궁 수련자 및 일부 위구르인들은 체포되어 구금되었으나, 적어도 파룬궁의 경우, 파룬궁 수련을 중단하겠다는 어떠한 약속이나 보증을 하지 않았음에도 석방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들에 대한 반복되는 체포와 구금은, 일부 사례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어떻게 이

21) 제노사이드 협약(1948년), 제2조 (a)항

22) 제노사이드 협약(1948년), 제2조 (b)항

23) 제노사이드 협약(1948년), 제2조 (c)항

24) 제노사이드 협약(1948년), 제2조 모자부분

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파룬궁 또는 위구르인들의 물리적·생물학적 절멸이 중국 공산당의 궁극 목표였다면, 이들의 석방은 이뤄지지 않았어야 했다. 그러나 목적이 주로 이윤을 위한 장기적출이었다면, 달리 고려될 것이다. 다툽 시바난탄이 주의를 요구한 바와 같이, 이윤을 위해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려는 의도는 보호되는 집단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파괴를 초래하기 위해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려는 의도와는 다르다.

183. 이 문제에 관한 본 재판소의 공판절차에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중국 공산당 대표들이 참여하지 않은 사실과,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에 대해 달리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노사이드 범죄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184. 재판소는, “집단 ‘전부’가 아닌 ‘일부’를 파괴할 의도만 있어도 제노사이드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일부 파룬궁 수련자나 위구르인들이 석방되었고(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떠나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점은 제노사이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불필요하다”는 예비적 주장도 검토하였다.
185. 재판소는, 장기이식 시장(불행히도 파룬궁 수련자와 위구르인들이 수요를 충족시킬 정도로 잘 준비된 풍부한 자원으로 제공되는)을 발전시키려는 정책이 시행된 시점에 일어난 일의 성격을 특징짓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과, 이들 집단에 대한 강제장기적출 가해행위를 유발한 일차적인 동기는 이들 집단의 구성원들을 전부 또는 일부 말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강제장기적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제노사이드 범죄의 요건인 의도나 필요한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제노사이드를 저지르려는 범죄 의도에 대한 지식 기반 접근법에 따라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다툽크 시바난탄의 조언대로, 법적 불확실성 투성이다.
186. **반인도 범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 규정²⁵⁾의 반인도 범죄의 정의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가한 공격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그와 같은 공격들이 중화인민공화국 내 파룬궁 및 위그루인들을 겨냥한 사실이 인정된다. 확실히, 이러한 공격들은 국가 지원 또는 국가 승인을 받은 것이며, 그러한 공격(들)을 자행하도록 하는 국가 정책에 따르거나 이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소는 강제장기적출은 충분히 공격에 해당한다는 영국여왕 칙선 변호사 에드워드 피츠제럴드의 자문에 동의한다. 재판소는 나아가 그러한 공격들이 확실히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25)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1999년) 7조.

187. 다음과 같은 행위들 중 하나 이상 역시, 중화인민공화국 내 파룬궁과 위구르인들을 상대로 자행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살해²⁶⁾, 절멸²⁷⁾,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기타 신체적 자유의 중대한 박탈²⁸⁾, 고문²⁹⁾, 강간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다른 형태의 성폭력³⁰⁾,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인종, 국가, 민족, 문화 또는 종교에 대한 박해³¹⁾, 강제 실종³²⁾ 등이다.
188. 종합해 보면, 재판소는 그러한 공격들 및 행위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함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혹은 ‘확신할 정도로(so as to be sure)’³³⁾ 일어났다고 확신한다.
189. 고문: 반인도 범죄의 맥락에서 앞서 인정한 고문 관련 사실에 기초해 보건대, 고문 행위들이 발생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고문방지협약의 맥락에서 보면, 재판소는 두 가지를 확신한다. 첫째로, 위 행위들은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심한 통증이나 고통을 가하며… 그(혹은 그녀)를 그(혹은 그녀)가 저질렀거나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행위를 이유로, 혹은 어떤 종류든 차별에 근거한 이유로 처벌하는 행위로서, 공무원 또는 기타 관직을 수행하는 자의 선동, 또는 동의 내지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가해행위’³⁴⁾에 해당한다.
190. 둘째, “통증 또는 고통이 오로지 합법적 제재로부터 발생하거나 혹은 이에 내재하거나 부수하는”³⁵⁾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재판소에 출석한 증인들이 경험하고 묘사한 처우 유형은 이런 예외에 의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191. 중화인민공화국 내 티베트 불교도와 가정 기독교 신자 등 다른 두 집단 관하여는, 검토한 가능한 범죄들의 구성요건을 만족시킬 만한 증거가 불충분했기

26)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1999년), 제7조 제(1)항 (a).

27)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1999년), 제7조 (1)항 (b) 및 제7조 (2)항 (b).

28)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1999년), 제7조 (1)항 (e).

29)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1999년), 제7조 제(1)항 (f) 및 제7조 제2항 (e).

30)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1999년), 제7조 제(1)항 (g).

31)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1999년), 제7조 제(1)항 (h) 및 제7조 제2항 (g).

32)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1999년), 제7조 제(1)항 (i) 및 제7조 제2항 (j).

33) 일부 관할 법원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대신 사용하는 ‘현대적’ 표현

34)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1984년), 제1조

35)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1984년) 제1조

때문에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없었다.

192. **취해야 할 조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재판소는 법률 의견 및 자문과 재판부의 집단지식을 종합하여, 대량학살, 반인도 범죄, 고문 등 국제법에 반하는 범죄를 기소하는 데 넘어야 할 사법적 장애물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193. 제노사이드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재판소가 도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유엔총회는 여전히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중화인민공화국 내 강제장기적출이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문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에 중화인민공화국의 동의는 필요 없을 것이다. 하나 또는 복수의 회원국이 같은 내용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충분한 지지가 있으면 총회에서 채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194. 국제적 수준의 조치는 또한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에 근거해 이뤄질 수 있다. 이는 2005년 대량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을 포함한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지지한 정치적 약속이다. 국제법 규범과 원칙은 각국 정부, 지역 및 국제사회가 그러한 상황에 개입하기 위한 행동을 개시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개입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이사국이다³⁶⁾.
195. 유엔 인권이사회가 47개 회원국 중 하나 또는 복수의 회원국이 제안한 결의안에 기초해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인권이사회에서 찬성이 다수이면, 인권이사회는 특별보고관을 파견해 중화인민공화국 내 양심수들에 대한 강제장기적출 혐의를 조사하고, 제노사이드, 반인도 범죄, 고문 등의 범죄가 실제로 자행되었는지 여부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조치는 다른 어떤 조치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선택지일 수 있다.
196. 자의적 구금에 관한 유엔 실무그룹 또한, 알려진 자의적 구금자와의 인터뷰를 위해 필요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6)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의 무제한적 거부권한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 http://www.globalr2p.org/our_work/un_security_council_code_of_conduct 참조. 본 재판소가 한 일이 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97. 그러나 국제적으로 가능한 개입을 너무 많이 찾아낼 경우, 어느 하나의 조치도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모두 실패할 위험성이 있다.
198. 각국 정부(또는 다른 조직)에서 출발한 국제적 수준의 조치와는 별도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내 조치도 가능하다. 일부 국가의 법원은 보편적 관할을 가지기 때문이다. 해당 국가의 법률 또는 국제법에 따라 인정되는 보편적 관할권은, 개인 원고들이 특정 개인들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심지어 제노사이드, 반인도 범죄 또는 고문에 해당하는 행위나 조치에 대해서는 주권 국가에 대한 소송까지 허용한다.³⁷⁾ 재판소는 2013년 스페인 법원에서, 티베트 망명자 집단이 특히 중화인민공화국 전 주석 장쩌민을 티베트인 제노사이드 혐의로 법정에 세워 유죄를 인정받은 사례에 대하여 알고 있다. 결국 스페인 법원은 장쩌민에게 국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이 사건의 최근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호주 멜버른의 변호사들은 최근 아웅산 수치를 로힝야 무슬림족에 대한 반인도 범죄 혐의로 기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199. 그러나 강조한 바와 같이, 본 재판소의 주된 역할은 어떠한 개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지 확실히 알아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다³⁸⁾ 앞서 각국 정부들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는바, 본 재판소로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내 강제장기적출 발생 또는 지속 사실에서 드러나는 사악함을 마주해, 각국 정부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임무는 시민, 활동가, 뜻있는 정치인들에게 남긴다.
200. 재판소는, 실망감에서, 영국과 호주 정부가 모두 자체적으로 혹은 유엔을 통해 혐의를 제대로 검증하려는 의욕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이러한 혐의는 죽음과 죽음을 비교하면 20세기 최악의 정치적 집단살해범들에 필적할 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세계 질서가 허용하는 가장 긴급하고 가장 이로우 수 있는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

37) 영국에서는 데이비드 알튼 경과 피오나 브루스 하원의원이, 제노사이드가 의심될 경우 시민이 정부의 행동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잉글랜드와 웨일즈 고등법원이 제노사이드 혐의 사건에 대한 1차 판결을 내리고, 이후 그러한 판단 결과를 국제형사재판소나 특별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제노사이드 가능성 때문에 조사가 요청된 사건에 대하여, 영국 정부의 대응하지 않을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안은 후속절차 진행을 위해 정부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fionabruce.org.uk/news/fiona-and-lord-alton-liverpool-host-parliamentary-event-question-genocide-determination>.

38) 그리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심사는, 더 낮은 수준의 믿음이나 '들어맞는 사례가 있다'라는 등 의견 수준의 판단과는 다르다. 정부 개입을 위한 경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더 낮은 기준에 의한 판단만으로도 충분히 정부에 대하여 국제 수준의 조사 기관으로서 나설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 영국과 호주는 예상하지 못한 것 같다.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다른 노선을 취했다.

201. 각국 정부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그렇게 오랜 기간 제기된 의혹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다시 언급한다. 세계 각국 정부들은 혐의를 증명하기 위한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부작위를 정당화하고, 공식적인 사법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로 나아가지 않는 것을 확실히 정당화할 수 있었다. 이 기간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러한 대우를 누리면서 기존의 행위가 지속되고 확대되도록 했을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심각한 혐의를 검증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제대로 감시했다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하여금, 엄청나게 강력한 상업 파트너와 경쟁자들 그 이상의 세계에서 중국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중단해야 함을 인식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비극적이게도 제어되지 않은 행위는 많은 사람들을 끔찍하고도 불필요하게 사망케 했다. 후대의 중국 지도자들이 국가의 복지와 위상에 결코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목적을 위해서 말이다.
202. 마지막으로 -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 각국 정부들이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을 경우, 보통의 미약한 시민이더라도 인터넷 시대에는 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직면하여, 전 세계 각국의 개인들은 합심하여 정부를 압박함으로써 정부 및 다른 국제기구들이 행동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할 것이다.
203. 한편, 소비자로서 시민의 역할도 간과될 수 없다. 미국 혁명 전에는 미국인들이 영국 제품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미국, 남아프리카와 같은 나라들을 상대로 간헐적으로 그 불매운동의 힘이 분출된 적이 있다. 보이콧의 효과는 늘 불확실하고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러한 사건에서 더욱, 혹은 가장 중요한 점은 고객층 대부분에게 중화인민공화국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웃'의 소행에 관하여 개별 시민이 가지는 양심의 가책은 그 이웃이 얼마나 가까운가에 반비례할 수 있다.

권고사항 및 최종 감시

20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판소가 내린 결론을 고려해 행동해야 할 개인과 기관, 정부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원의 권고 사항을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5. 그러나 이하의 내용 정도는 말할 수 있겠다(거듭 말하건대, 책임 있는 정부들

이 진즉에 수행했어야 할 감시였기 때문에 이제야 이를 언급하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다). 중국이라는 놀랍고 다양하며 세련된 문화의 땅에서,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공산당은 일부 다른 국가들의 경우보다 인민들의 삶의 영역에 더 많이 관여할 수 있다. 중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어떤 방식으로든 실질적인 왕래가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 의사 및 의료 기관
- 특히 항공사, 여행사, 금융회사, 로펌, 제약회사, 보험회사 등 산업계와 사업체, 그리고 개인 관광객
- 교육단체
- 예술단체

지금부터 이들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자신이 한 범죄국가와 왕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마틴 엘리어트
앤드류 쿠
제프리 나이스(재판장)
레지나 파울로스
샤디 사드르
니콜라스 베치
아서 왈드론

2019년 6월 17일

감사의 말씀

조사 자문:

하미드 사비
타비타 나이스.
마르쿠스 핀들레이